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915-10





## I 2018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_ 1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3
2. 사업 취지 및 목적 .....	4
3. 사업 운영체계 .....	5
4.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6
5.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절차 .....	9

## II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_ 11

1. 어린이집 이해하기 .....	13
2.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역량 .....	19
3.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세 .....	21
4. 부모모니터링 진행방법 .....	23
5. 컨설팅 진행방법 .....	28
6.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시 유의사항 .....	30

**Ⅲ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평정 해설 \_ 33**

1. 부모모니터링 지표 근거 및 방향 .....	35
2.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등급평정 방식 .....	36
3. 부모모니터링 지표별 평정 기준 .....	41
영역 1. 건강관리 .....	41
영역 2. 안전관리 .....	54
영역 3. 급식관리 .....	82
영역 4. 위생관리 .....	94

**Ⅳ 부모모니터링 서식 \_ 107**

1.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	109
2. 부모모니터링단 점검표 .....	114
3. 컨설팅 결과보고서 .....	122

**V 부록 - 주요개정사항 \_ 125**

1. 2018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주요 개정사항 .....	127
2. 2018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주요 변경사항 .....	130

# 2018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취지 및 목적
3. 사업 운영체계
4.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5.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절차



# I. 2018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공무원 중심의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달리 수요자인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질 높은 보육환경을 위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여 부모의 참여와 어린이집의 개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 수행
- 어린이집 참관 위주의 모니터링 뿐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중심의 체계 구축
- 보육서비스 제공자(어린이집)와 수요자(부모)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가능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추진 현황					
- 2013년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으로 시작 * '13.5.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항 신설, 법적 근거 마련					
- 2013년 16,019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약 24,226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b>&lt;2013~2017년 부모모니터링 실시 현황&gt;</b>					단위 : 개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16,019	27,169	27,948	26,237	24,226
- 2013~2017년 부모모니터링단 참여인력은 다음과 같음					
<b>&lt;2013~2017년 부모모니터링 참여인력 현황&gt;</b>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1,810(100)	1,701(100)	1,660(100)	1,579(100)	1,474(100)
부모 단원	1,142(63.1)	892(52.4)	845(50.9)	804(50.9)	734(49.8)
전문가 단원	616(34.0)	669(39.3)	731(44.0)	708(44.8)	686(46.5)
컨설턴트	52(2.9)	140(8.2)	84(5.1)	67(4.2)	54(3.7)

2

**사업 취지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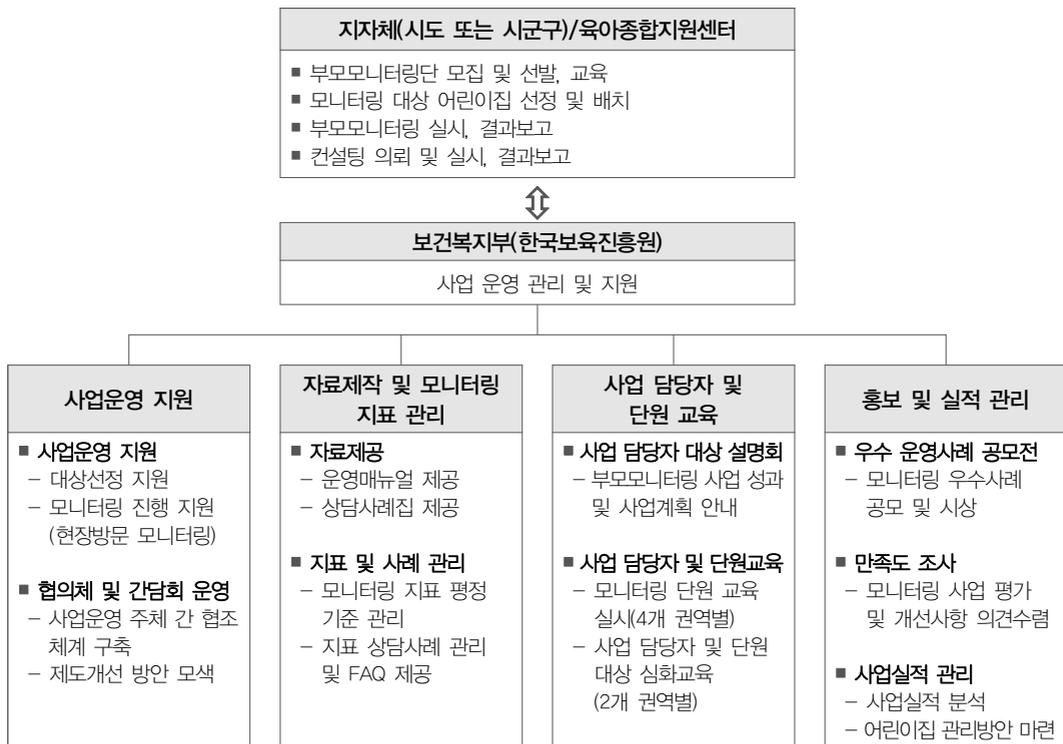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전파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사업 운영체계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운영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되 모니터링단 교육, 컨설팅 등 사업의 일부를 관할 시도단위로 시행 가능
    - ※ 시군구 단위로 운영할 경우, 해당 시도의 운영계획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모니터링의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도와 협력하여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內 부모모니터링 사업수행인력(겸직 가능)을 배치하고, 계약직 1명(6개월 내외)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리·지원체계 마련
  - 시도 단위 교육 실시·지원, 상담사례 및 심화교육 자료집 발간,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단 상담 및 지원, 지표 개선, 사후관리 등에 대해 연중 지원 실시
- 중앙단위에서 사업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사업비용 시도별 분담 시행



## 4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 부모모니터링단 선정 및 구성

- 모니터링단은 시군구별 10명 이내(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
- 모니터링 단원은 공모 절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보, 보육포털사이트 등에 게재)에 의거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 단, 지역특성상 공모 절차에 의한 모집이 어려운 경우 예외(예 : 읍면 도서지역 등)
  -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병행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모니터링단 선정기준은 「2018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모는 **관할 시군구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 이용 부모\***로 하여 부모참여 확대와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이해를 제고함
    -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만 참여하는 부모는 부모모니터링단 참여 제한
  -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이해 제고와 부모참여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부모의 활동기간을 연속하여 최대 2년으로 제한\***
    - \* 2018~2019년 연속하여 부모 단원으로 활동한 경우 2020년 활동 불가, 2021년 활동 가능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 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 보육사업 안내**」의 선정기준 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 ※ <예시 ①>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 보육현장 근무경력 3→5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3년 이상인 자
  - ※ <예시 ②> 보건전문가: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보육현장 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 추가)

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li> <li>•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li> <li>※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li> <li>•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li> </ul>
보건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포함)</li> <li>•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li> </ul>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li> </ul>
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li> <li>•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li> <li>•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 결과 90점 이상 또는 A등급 이상인 자(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li> </ul>

※ 모니터링단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촉할 수 있음

### ▣ 부모모니터링단원 교육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상반기에 강사진 및 사업 담당자, 단원을 대상으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실시함
- 시도지사는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반드시 2회 이상**(상반기: 현장 및 이론교육, 하반기:보수교육) **다음 내용\***을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또는 모니터링단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 등 지표에 대한 설명 등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 보육·보건전문가가 2개 이상 시군구의 단원인 경우, 중복하여 시군구 교육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 가능함. 다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중복 참석 가능함
  - 시도지사는 직접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접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등 모니터링이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시군구청장은 기본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 간담회, 소그룹 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 부모모니터링 대상

- 어린이집 평가인증(확인점검 포함) 등과 중복 품질관리 방지, 어린이집 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장 부담완화 등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대상 우선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하여 실시함**

-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
- 최근 3년간('15~'17)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 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 평가인증(재인증)일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예시)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2017.11.15.~2020.11.14.(3년)인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 제외기간은 2017.11.15.~2018.11.14. 까지임
- 2017년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 \* 당해 연도 확인점검 받은 어린이집이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된 경우, 어린이집 요청 또는 지자체가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관리 강화

- 모니터링 우선 선정 및 선정제외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운영주체(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는 모니터링 대상을 연간 조정하여 중복점검을 방지하여야 함
  - 연초의 모니터링 대상의 경우 평가인증, 확인점검 등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반드시 모니터링 대상을 조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 사업대상 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추진
  - \* 컨설팅 연계, 교육 및 간담회, 사업평가회 개최 등 실시

#### ☑ 부모모니터링 실행력 제고

- 부모모니터링·컨설팅의 거부·방해·기피 등이 있는 경우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연계 가능함
  - \* 부모단의 지자체 보고 → 지자체의 지도점검 연계 필요성 검토하여 실시 가능

## 5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절차

구분	주요 내용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구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및 선정</li> <li>• 부모모니터링단 구성(부모, 보육·보건전문가), 모니터링 신분증 제작</li> <li>• 부모모니터링단 교육(현장 및 이론교육, 보수교육)</li> </ul>
↓	
어린이집 선정 및 모니터링단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선정</li> <li>• 부모모니터링단원 어린이집 배치(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 구성)</li> </ul>
↓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모니터링단원 : 어린이집 방문 일자 1주일 전까지 사전 협의*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 가능(공무원 동행 필요)</li> <li>*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일정 변경 금지</li> <li>•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차참 후 어린이집 방문</li> <li>• 어린이집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하고, 급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1일 1개소에 한하여 실시함</li> <li>※ 부모 단원은 급식위생영역, 전문가 단원은 건강안전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실시하고, 「부모모니터링 점검표」에 지표 충족(Y/N)여부, 개선 필요사항 등 기재</li> <li>•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부모 단원, 전문가 단원이 함께 최종 논의 후, 결과 반영</li> <li>• 전문가 단원은 최종 결과를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작성</li> <li>•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의 개선필요사항을 토대로 현장개선지도</li> <li>• 부모모니터링단원 및 어린이집 원장 상호 서명하고 모니터링 종료</li> </ul>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단원은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와 「부모모니터링 점검표」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에 제출)</li> <li>•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와 「부모모니터링 점검표」 사본 등으로 3일 이내 제출(추후 원본제출)</li> <li>•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항은 보육담당공무원 등에게 즉시 보고</li> </ul>
↓	
교육 및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실시 중간에 모니터링단원 대상의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li> </ul>
↓	
컨설팅 의뢰 및 실시,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 등급은 의무적으로 컨설팅 연계하고, 컨설팅 후 1개월 내에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여부 확인</li> <li>– 2차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사항 발생 시 추가 컨설팅 실시</li> <li>• 모니터링 결과, ‘우수’ 및 ‘양호’ 등급은 어린이집 요청 시 컨설팅 실시 가능 하되, 추가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음</li> <li>• 컨설팅은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하여 전문컨설턴트가 진행</li> <li>•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시도 또는 시군구청)</li> </ul>



## 2018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1. 어린이집 이해하기
2.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역량
3.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세
4. 부모모니터링 진행방법
5. 컨설팅 진행방법
6.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시 유의사항



## II. 2018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1

### 어린이집 이해하기

#### ☑ 어린이집의 정의(영유아보육법 제2조)

-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임

#### ☑ 어린이집의 유형(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11인 이상)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21인 이상)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21인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 5인 이상)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11인 이상)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21인 이상)

####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영유아보육법 제27조)

-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 ▣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함\*(보육과정 운영시간과는 별개임)
  - \*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 가능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를 대비하여 휴원 계획과 당번 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함
-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 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예시)

영아반 하루 일과의 예(만2세)		유아반 하루 일과의 예(만4세)	
7:30~9:00	등원 및 통합보육	7:30~9:00	등원 및 통합보육
9:00~9:30	손 씻기 및 기저귀 갈기/ 오전 간식	9:00~10:30	오전 자유선택활동/ 오전 간식
9:30~10:50	오전 실내자유놀이	10:30~10:50	정리정돈 및 화장실가기
10:50~11:10	정리정돈 및 화장실가기	10:50~11:20	대소집단 활동
11:10~11:50	오전 실외활동	11:20~12:20	실외활동
11:50~13:20	점심식사 및 이 닦기	12:20~13:20	점심식사 및 이 닦기
13:20~15:00	낮잠	13:20~14:00	조용한 활동, 정리정돈 및 낮잠 준비
15:00~15:30	화장실가기 및 오후간식	14:00~15:30	낮잠 및 휴식
15:30~16:50	오후 실내자유놀이	15:30~16:00	낮잠 깨기 및 정리정돈
16:50~17:30	오후 실외활동	16:00~16:30	오후간식
17:30~19:30	귀가 및 통합보육	16:30~18:00	오후 자유선택활동
		18:00~19:30	귀가 및 통합보육

\* 어린이집 운영 상황과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하루일과 조정 가능

\* 출처 :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2세), 4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 맞춤형 보육 일과 운영(예시)

운영시간	만0~1세반		만2세반	
	맞춤반	종일반	맞춤반	종일반
7:30~9:00	-	종일반 등원 및 통합보육	-	종일반 등원 및 통합보육
9:00~10:20	맞춤반 등원 / 실내 자유놀이		맞춤반 등원 / 실내 자유놀이	
10:20~10:50	손 씻기 및 기저귀 같이(또는 배변활동) 오전 간식(또는 이유식)		손 씻기 및 화장실 가기 오전 간식	
10:50~11:30	실외활동		실외활동	
11:30~12:40	손 씻기 및 기저귀 같이(또는 배변활동) 점심 및 이 닦기		손 씻기 및 화장실 가기 점심 및 이 닦기	
12:40~14:30	낮잠 및 휴식		낮잠 및 휴식	
14:30~15:00	손 씻기 및 기저귀 같이(또는 배변활동) 오후간식(또는 이유식)		손 씻기 및 화장실 가기 오후간식	
15:00~17:30	맞춤반 하원	오후 실내자유놀이 손 씻기 및 기저귀 같이 (또는 배변활동) 오후 실외활동	맞춤반 하원	오후 실내자유놀이 손 씻기 및 화장실 가기 오후 실외활동
17:30~19:30		통합보육 (실내자유놀이) 종일반 하원		통합보육 (실내자유놀이) 종일반 하원

\* 출처 : 보건복지부(2017). 맞춤형 보육운영 가이드라인 교사용.

▣ 하루 일과의 영유아 놀이와 활동

하루 일과	내 용
등원	부모로부터 격리되는 것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이하고 돌보아주는 시간임. 이 때 교사는 부모로부터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듣기도 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기분 상태를 확인함
간식/점심	먹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줌. 영유아들은 손 씻기, 이 닦기, 수저 사용하기, 정리하기와 같은 기본생활습관을 익힐 수 있음
자유선택활동	영유아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구성된 흥미영역에서 스스로 놀잇감을 선택하고 놀이함. 교사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놀잇감을 제공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지원
정리정돈	놀이한 후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연령에 따라 알맞은 정리 방법 사용. 정리 정돈을 하면서 서로 돕기, 규칙 지키기를 배움
실외활동	실외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다양한 신체운동 놀이를 함으로써 신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탐구하는 태도가 발달하도록 함
집단활동	이야기나누기, 노래, 게임, 동극 등을 소집단 또는 대집단으로 진행함. 교사가 계획 하여 제공하기도 하고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식과 태도를 익힘
낮잠	영유아들이 낮잠을 쉽게 잘 수 있도록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조성함. 영유아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교사는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돌봄
귀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고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 교사는 영유아의 하루 일과 중의 특별한 사건이나 변화를 부모와 이야기 나눔

\*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어린이집 이해와 운영위원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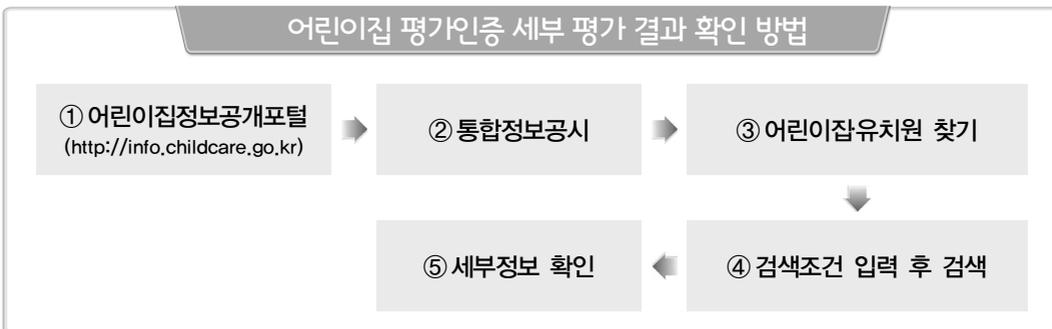
###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 어린이집에서 0-5세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서 보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어린이집에서 운영해야 할 보편적인 보육내용을 포함함
-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도와 행복을 도모하며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0-1세, 2세를 위한 보육과정, 3-5세를 위한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  
\* 3-5세 누리과정이란 3-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정
- 표준보육과정의 영역



### ▣ 어린이집 평가인증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



## 2

##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역량

## ▣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 어린이집의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영역 모니터링
  - 부모모니터링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닌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임
- 모니터링 지표를 바탕으로 현장개선지도
  -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현장에서 개선사항을 지도하되, 현장개선 지도 시에는 반드시 보육·보건전문가가 의견을 전달함
- 모니터링 이후 컨설팅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
  - 모니터링 이후라도 어린이집이 보다 심도 깊은 컨설팅을 원하거나,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 등급인 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

## ▣ 부모모니터링단의 역량

-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이해
  - 부모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과 영유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함
    - ※ 개인적인 취향이나 요구 등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해석하지 않음
  - 모니터링 지표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 보육사업안내, 지도점검 및 평가 인증지표 등을 바탕으로 수립된 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이해
  - 모니터링은 공무원 지도점검이나 평가인증과는 달리 어린이집의 우수한 점을 격려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모니터링은 부모와 보건·보육전문가가 함께 2인 1조로 구성되어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모와 전문가가 서로 소통하며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함

※ 부모 단원과 전문가 단원이 각각 해당 영역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후 함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보고서에 작성함

- 어린이집 방문 전 사전일정을 조율하고, 어린이집 방문 후에는 반드시 관계자의 협조 하에 모니터링 진행함(어린이집 불시 방문 지양)
- 어린이집 사정과 상황에 맞지 않거나 너무 과도한 자료 등을 요구하지 않음

● 컨설턴트로서의 역량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아닌 ‘모니터링 지표’ 중심의 컨설팅을 진행함
- 의무컨설팅으로 연계되는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컨설팅 및 2차 모니터링이 실시됨을 고려하여 진행함
- 컨설턴트는 보육교직원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물론, 협력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안내방법 등이 필요 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이해심, 비밀 존중,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함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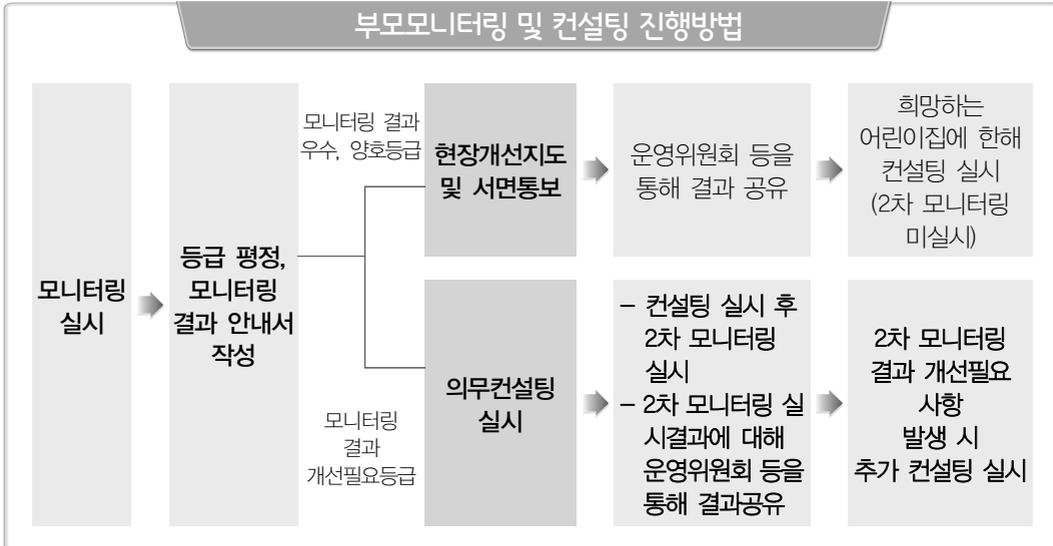
##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세

## ☑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세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 및 보육교직원 존중하기
  -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특성 등에 대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어린이집을 비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됨
  - 어린이집 방문 시에는 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눈이 마주쳤을 때는 미소를 띠고 인사나 목례 등을 함
- 영유아를 존중하고, 보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 모니터링 진행 시 영유아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함
    - \*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놀잇감 모두 쏟아 놓기, 보육활동 중인 영유아에게 사적인 이야기 걸기 등
  - 영유아와 눈이 마주쳤을 경우 반갑게 인사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나, 함부로 만지거나 음식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됨(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신체접촉 금지)
  - 영유아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육교직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 즉시 보육교직원에게 이야기함
-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 유지, 어린이집에 대한 공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보육서비스 이용자인 부모 및 영유아에게 친절한 자세를 유지함
  -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며, 미흡한 점을 발견하여 현장 개선지도 시에는 더욱 존중하며 친절하게 지도함
- 공손한 언어, 긍정적·청유형 언어 사용
  - 보육교직원의 나이, 경력 등과 상관없이 모든 보육교직원과 부모 등에게 공손하고 정중한 언어를 사용함(반말 사용 금지)
  - 부정적·지시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청유형 언어(~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를 사용함

-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과 태도
  - 어린이집 방문 시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함(너무 짧은 치마나 헝클어진 머리 지양, 양말이나 덧신 착용)
  - 어린이집 방문 시 가급적 손을 씻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특히 조리실이나 영유아 급·간식 관찰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모니터링을 진행함
-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제시
  - 미흡한 점에 대한 현장개선지도 시 근거(법령 및 지침)를 토대로 설명하고, 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객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내함  
(예시) “조리직원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네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조리직원은 음식 조리 시 반드시 위생모와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위생모를 준비하셔서 착용하세요.”
  -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래요?” 라고 지적하지 않고 친절히 안내하며, 결과안내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함
  - 선입견이나 개인적 취향 등을 반영하여 지표를 해석하거나 현장개선지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한 가지 영역이 미흡하다고 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주의함
- 모니터링 결과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영역에 대한 우수사례 적극 격려
  - 모니터링 지표를 기준으로 우수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격려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우수한 점에 대해 격려함

4 부모모니터링 진행방법



☑ 모니터링 준비

- 대상 어린이집 확인
  - 시도 및 시군구청(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어린이집 명단을 토대로 부모 단원과 전문가 단원이 함께 어린이집 명단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일정을 계획함
  - 부모모니터링단은 하루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정된 시간\*에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 실시**
  - \* 급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된 시작(09:30~10:00) 및 종료(12:30~13:00) 시간에 모니터링 실시
  - \*\*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어린이집 방문 일정 협의
  - 어린이집과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방문 1주일 전까지)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 가능(공무원 동행 필요)
  -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일정 변경 금지

● 어린이집 찾기

- 어린이집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함(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음)
  - ※ 다만,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자가 이용
- 사전에 어린이집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함
  -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찾기(위치검색서비스)

▣ 모니터링 진행

●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제시

-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이 경우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 다만, 관계 공무원이 함께 출입할 때에는 승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안내하기

- 어린이집 현관 입구에서 도착을 알린 후 안내를 받아 입실함
- 원장실 또는 사무실에서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모니터링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시작함

(예시) “안녕하세요? 부모모니터링단 000입니다. 모니터링에 앞서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 점검 영역은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모두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항목에 따라 문서 및 관찰, 보육교직원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시작하겠습니다.”

● 모니터링 실시

- 건강·안전·급식·위생관리 영역의 지표에 대해 관찰, 면담, 기록 등의 확인방법을 준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
- **부모 단원은 급식·위생관리 영역, 전문가 단원은 건강·안전관리 영역을 구분 실시함**

- 각 모니터링 지표의 확인사항을 「부모모니터링 점검표」를 토대로 꼼꼼하게 확인한 후, 결과를 ‘충족(Y)’ 또는 ‘미충족(N)’으로 표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함
- 부모 단원과 전문가 단원이 해당 영역에 대해 확인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재차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전문가 단원이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기재함
- 현장개선지도는 반드시 전문가 단원이 진행하며,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의 개선필요사항을 지표의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설명하고 자율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 부모 단원 개인의 의견을 전문가 단원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
- 모니터링 실시 중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피해가 우려되어 즉시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해당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반드시 당일 통보함

〈 모니터링 일과 진행 예시 - 1일 1개소(원칙) 기준 〉

소요 시간* (총 3시간)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10:00~10:10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인사</li> <li>• 어린이집의 전체 분위기 및 현황 파악</li> <li>• 모니터링 지표 내용 및 확인방법 안내</li> </ul>
10:10~12:40 (1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 모니터링(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응급조치 체계)</li> <li>• 안전관리 모니터링(물리·작업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li> <li>• 급식관리 모니터링(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 관리, 식재료 관리)</li> <li>• 위생관리 모니터링(급식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li> </ul>
12:40~13:00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단원 간 상호 논의 후, 결과안내서 작성</li> <li>• 원장에게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 안내(결과안내서 서명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부재 시 주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에게 안내</li> </ul> </li> <li>• 어린이집에 결과안내서를 통해 개선사항 서면으로 제공</li> </ul>

\* **급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된 시작(09:30~10:00) 및 종료(12:30~13:00) 시간에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요시간 조정 가능

● 모니터링 종료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안내한 후, 「부모 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앞면에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을 받음
  - \* 원장의 확인 서명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임교사 등이 대리 서명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을 받은 후,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를 복사하여 복사본은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원본은 전문가 단원이 관리함
- 부모 단원과 전문가 단원이 모니터링 시 사용한 「부모모니터링 점검표」는 모니터링 진행 후, 전문가 단원이 관리함
  -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및 「부모모니터링 점검표」 원본은 추후 시군구청에 제출함
- 모니터링 실시 결과 ‘개선필요’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추후 컨설팅이 의무 연계되며, 컨설팅 이후에는 2차 모니터링이 진행됨을 안내하고, ‘우수’ 또는 ‘양호’ 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희망할 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함
- 모니터링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응답 후 마무리 인사를 함
  - (예시) “모니터링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모니터링 결과 개선이 필요하여 안내해 드린 사항은 꼭 확인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모니터링 실시결과 보고

### ● 부모모니터링 실시결과 보고

- 모니터링 현장에서 작성한 결과 안내서에 총괄 의견과 특이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함
  - ※ 부모 단원과 전문가 단원이 협의하되, 전문가 단원이 직접 작성
- 최종 작성한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와 「부모모니터링 점검표」 원본은 추후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되, 사본은 3일 이내 제출함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센터로 제출
- 아동학대, 법령 위반사항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함

부모모니터링 점검표 작성방법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		개선 필요 사항 (N평정사유 포함)
		Y	N	
1-1.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관하고 있다.	1-1-① : 기록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서류 구비 여부 (전체 _____ 중 _____ 명)			

**①**  관련 내용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관련 내용 기재  
**②** 확인 결과(✓) 란에 충족여부에 따라 ‘Y’ 또는 ‘N’ 에 체크(✓)  
**③** 개선 필요 사항에는 ‘N’ 평정 사유를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확인 결과 ‘Y’ 로 평정되었더라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음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작성방법					
<b>□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앞면)</b>					
구분	모니터링 영역				기관등급
	1. 건강관리	2. 안전관리	3. 급식관리	4. 위생관리	
영역별 등급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총괄 의견	(예시) 모니터링 결과, 귀 어린이집은 건강, 안전, 급식관리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생관리 중 조리실의 위생관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개선 필요 사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선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①** 각 영역별 항목의 충족여부에 따라 해당 영역별 등급(□ 우수 □ 양호 □ 개선필요)에 체크(✓)  
 예) 건강관리 5개 항목 중 5개 충족일 경우, ‘□ 우수’ 에 체크(✓), 3~4개 충족일 경우, ‘□ 양호’ 에 체크(✓)  
**②** 4개 영역별 등급 종류 수에 따라 해당 기관등급(□ 우수 □ 양호 □ 개선필요)에 체크(✓)  
 예) 건강, 안전, 급식관리 ‘우수’, 위생관리 ‘개선필요’ 인 경우 기관등급(□ 개선필요)에 체크(✓)  
**③** 총괄 의견에 (예시)와 같이 모니터링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함

5

**컨설팅 진행방법**

**▣ 컨설팅 준비**

- 컨설팅 어린이집 선정
  -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컨설팅 실시함
  - 모니터링 결과 ‘우수’ 및 ‘양호’ 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컨설팅 실시함
  - 모니터링 결과 ‘우수’ 및 ‘양호’ 등급이라 하더라도, 일부 영역(건강, 안전, 급식, 위생)에서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컨설팅 실시(시도 및 시군구청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논의 후 판단)
    - ※ 1일 1~2개소 어린이집을 컨설팅하며, 컨설팅 점검 내용에 따라 개소 수 조정 가능
- 어린이집 방문 일정 협의
  - 컨설턴트는 컨설팅 진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일정을 사전협의(방문 7일 전까지)한 후 방문함
- 컨설팅 어린이집의 부모모니터링 결과안내서 확인
  - 시·도 또는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은 모니터링단이 제출한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의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를 컨설턴트에게 송부함
  - 컨설턴트는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의 개선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지표를 확인함

**▣ 컨설팅 진행**

- 어린이집 방문
  - 어린이집 현관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의 안내를 받고 들어감
-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함
  - 어린이집 요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항목 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모니터링 지표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함
  - 모니터링 항목에 따라 컨설팅 진행 결과를 「부모모니터링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기재함

- 컨설팅 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안내한 후, 결과보고서 앞면에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을 받음
- 2차 컨설팅의 경우 현장 컨설팅, 우수 어린이집 방문 기회 제공, 품질관리 사례 회의 등으로 실시 가능

**▣ 컨설팅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팅 현장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추가 기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여 시도 및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센터로 제출

부모모니터링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영역	지표	컨설팅 주요 내용
4. 위생관리	4-1.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 4-2.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4-3. 식수, 우유(모유), 컵, 젓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4-4. 조리실 및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4-5.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4-6.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4-7.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	(예시) 보육실의 놀잇감 중 형질 인형과 블록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 놀잇감의 종류별 세탁 방법을 안내함
총계	컨설팅 항목수	( 3 ) 개
총괄 의견	(예시) 조리실은 전반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보육실을 포함한 실내공간의 놀잇감은 보다 청결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놀잇감별 세탁방법은 토대로 놀잇감을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❶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 후, 주요 내용을 기재함
- ❷ 항목별 컨설팅을 진행한 총 항목수를 기재함
- ❸ 컨설팅 결과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간략하게 기재함

6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시 유의사항**

**☑ 모니터링 장소별 유의사항**

- 영유아 활동 공간(보육실 등)
  - 영유아를 만났을 때, 밝게 웃으며 인사한 후 모니터링을 진행함
  - 영유아의 활동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육실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관찰함
  - 모니터링단의 이동 및 대화 등으로 활동 및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함
  - 실내외 시설 및 놀잇감 등의 안전 및 위생상태 확인 시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확인(잘못된 예: 놀잇감을 모두 쏟아놓거나 교구장을 모두 비워놓기 등)
- 조리실 및 식당
  - 조리직원에게 인사를 한 후 모니터링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확인 후에는 감사 인사를 함
  - 모니터링은 급·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므로 조리실 입실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복장과 머리를 단정히 함(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
  - 식자재 확인 시에는 조리직원에게 먼저 요청하거나 양해를 구한 후, 확인함  
(예시) “식자재 유통기한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후드 및 환풍기가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드 작동을 부탁드립니다.”
  - 입고일 및 유통기한 확인 등을 위해 식자재를 점검할 경우 특히 위생에 주의하며, 식자재가 흐트러지거나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꼭 조리직원이나 보육 교직원의 협조 아래 확인함
- 화장실
  - 영유아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 관찰함

**☑ 일반적인 유의사항**

- 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점검
  - 부모모니터링은 어린이집의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지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확인하거나 필요이상의 문서를 요구하거나 관찰 및 면담 등을 진행하지 않도록 함

- 모니터링 지표 확인 방법은 ‘기록, 관찰, 면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별 확인방법을 토대로 점검함**
  - 예) 어린이집 환기 및 온도의 적절성 여부의 경우, ‘관찰’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기록’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음
- 현장개선지도나 컨설팅 시에도 모니터링 지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업무 과중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함**
- **어린이집 정보를 외부로 발설하지 않으며, 비밀 유지하기**
  - 모니터링 과정에서 알게 된 어린이집 정보는 어디에서도 공개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하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함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시 어린이집 사진 촬영을 금하며, 어린이집 정보 등을 개인 블로그나 카페, SNS 상에 공개하지 않음
  -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영유아 등의 개인정보가 모니터링단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이 책임짐(정보보안 서약)
  - 모니터링 진행 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개인정보열람을 하지 않음. 다만,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서류 확인 시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관계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기록을 확인
- **구매영수증 등 ‘회계 관련 장부나 문서’ 등은 확인하지 않음**
  - 부모모니터링 지표에서는 ‘구매영수증’ 등 어린이집 회계 관련 자료는 확인 안함
    - 예) 식품구입일자 확인 시 ‘식자재’ 포장지나 용기 등에 붙어있는 식품구입날짜 표기를 통해 확인
- **모니터링 종료 후 반드시 결과 안내서에 ‘원장’서명 받기**
  - 모니터링 결과안내서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해 안내한 후, 반드시 원장 서명을 받고, 원장 부재 시에는 원장이 위임한 주임교사 등에게 서명을 받음
- **모니터링이나 컨설팅 수행을 위한 자료, 면담 외에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음**
  - 보험이나 물건 판매, 개인 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언급하지 않음
- **영유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어린이집 운영 위법사례 발견 시 반드시 당일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평정 해설

1. 부모모니터링 지표 근거 및 방향
2.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등급평정 방식
3. 부모모니터링 지표별 평정 기준
  - 영역 1. 건강관리
  - 영역 2. 안전관리
  - 영역 3. 급식관리
  - 영역 4. 위생관리



## Ⅲ.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평정 해설

1

### 부모모니터링 지표 근거 및 방향

#### ☑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근거

- 2018년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음
- 영유아를 위한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4가지 영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부모, 전문가,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 투명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 하며, 모니터링 후 현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 하여 컨설턴트가 직접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체계임

#### ☑ 모니터링 지표 및 평정방식(점수제→등급제) 개선

- 유사·중복지표를 통합·조정하여 지표수를 적정화(4개 영역 30개 지표 → 4개 영역 25개 지표) 하고, 평가인증 통합지표의 확인내용 수준과 일치시켜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제고함
- 점수와열 및 점수평정에 대한 업무 부담 완화,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우수, 양호, 개선필요)으로 산정함
  - 지표별 평가항목의 충족(Y/N)개수로 모니터링 결과를 산정함에 따라,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표 평정 실시

## 2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등급평정 방식

☑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의 4영역,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1. 건강관리(5)	2. 안전관리(8)	3. 급식관리(5)	4. 위생관리(7)
1.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2. 감염병 예방·관리 3. 응급조치 체계 4. 비상약품 구비 5. 투약의뢰절차	1. 실내외 시설 관리 2. 화재 등 비상상황 대비 3.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4. 등·하원 인계과정 5. 차량 안전관리 6. 아동학대 예방 교육 7. 아동권리존중 실천 8. 아동학대예방 안내	1. 식단 및 영양관리 2. 식품 알레르기 관리 3. 조리과정 위생 4. 식자재 보관규정 5. 식자재 보관 장소 관리	1. 조리직원 복장 위생 2. 급·배식도구 및 과정의 위생 3. 식수, 우유 등 관리 4.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5. 실내공간 및 놀이감 청결 6. 개별침구, 칫솔 등 청결 7. 환기 및 온도 관리

### 영역 1 건강관리

영역	내용
1. 건강관리 (5)	1-1.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관하고 있다.
	1-2.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있다. ② 보육교직원이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 ③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1-3.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다. ②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를 관리하고 있다.
	1-4.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①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1-5.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

**영역 2** 안전관리

영역	내용
2. 안전관리 (8)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② 실내외 놀잇감이 파손된 부분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③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
	2-2.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관리되고 있다. ②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대피요령, 비상대피도, 업무분장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2-3.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②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방(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4.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 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2-5.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 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 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다. ② 모든 통학차량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차량안전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③ 모든 통학차량에 대해 매일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④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 ⑤ 차량운전자와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은 차량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다.
	2-6.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알고 있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 ②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다.
	2-7.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
	2-8.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①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가정에 안내하고 있다.

**영역 3** 급식관리

영역	내용
<p>3. 급식관리 (5)</p>	<p>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li> <li>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li> <li>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li> </ul>
	<p>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li> <li>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li> </ul>
	<p>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li> <li>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li> </ul>
	<p>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한다.</li> <li>② 식자재별로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li> <li>③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li> </ul>
	<p>3-5.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li> <li>②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li> </ul>

**영역 4** 위생관리

영역	내용
4. 위생관리 (7)	4-1.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 ①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 (장신구 착용 불가).
	4-2.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① 급·배식 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②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4-3. 식수, 우유(모유), 컵, 젓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①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② 컵, 젓병, 젓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
	4-4. 조리실 및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4-5.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4-6.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4-7.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환기가 자주 이루어져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된다. ②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

▣ 부모모니터링 등급평정 방식

- 각 영역의 지표별 충족여부에 따라 ‘충족(Y)’ 또는 ‘미충족(N)’에 체크
- 각 영역별 ‘충족(Y)’ 지표 개수에 따라 3개 등급 중 1개 부여
- ▶ 2-1-①의 경우 5개의 구성요소( ①~⑤ ) 중 4개 이상 충족해야 ‘Y’로 평정
- ▶ 4-4-①의 경우 3개의 구성요소( ①~③ )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Y’로 평정

영역(지표 수)	‘충족(Y)’ 지표 수		
1. 건강관리(5)	5개	3~4개	1~2개
2. 안전관리(8)	8개	5~7개	1~4개
3. 급식관리(5)	5개	3~4개	1~2개
4. 위생관리(7)	7개	4~6개	1~3개
	↓	↓	↓
	우수	양호	개선필요

- 어린이집의 최종 모니터링 등급은 영역별 등급 종류(우수, 양호, 개선필요)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양호, 개선필요) 중 1개 등급 부여
- ※ 1개 영역이라도 ‘개선필요’ 시 ‘개선필요’ 등급 부여

어린이집 등급	등급부여기준	예시
우 수	모든 영역 모두 ‘우수’ 등급인 기관	‘우수’ 영역 4개
양 호	‘개선필요’ 등급인 영역이 없고, ‘우수’ 등급이 아닌 기관	‘우수’ 3개, ‘양호’ 1개 영역 ‘우수’ 2개, ‘양호’ 2개 영역 ‘우수’ 1개, ‘양호’ 3개 영역 ‘우수’ 0개, ‘양호’ 4개 영역
개선필요	1개 영역 이상 ‘개선필요’ 등급인 기관	‘개선필요’ 영역 1개 이상

### 3 부모모니터링 지표별 평정기준

#### 영역 1 건강관리

영유아기는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영유아가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이를 다른 영유아에게 쉽게 감염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미리 준비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비상약품의 유효기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영역	내용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확인자료
1. 건강관리 (5)	1-1.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결과서
	1-2.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	○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 안내자료
	1-3.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			응급처치동의서, 응급의료기관 연락망
	1-4.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 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		-
	1-5.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	○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 관련 기록

영역 등급 평정기준	
우 수	5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5개
양 호	5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3~4개
개선필요	5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1~2개

1-1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관하고 있다.

확인방법	기록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1개의 평정기준 (①)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 모든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확인방법 ◀

→ [1-1-①] 기록

- ▶ 모든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결과서 확인(신규 보육교직원은 채용신체검사서 등)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건강검진 증빙서류 확인
  - 예) 2017년 1월 건강검진 실시, 2018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됨

-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시설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서와 건강진단결과서(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 반드시 포함 실시. 단, 집단급식소가 아닌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는 권장사항임
- 보육실습생,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거나 함께 거주하는 자,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 가능

**<참고>**

■ **검사항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의 건강진단 시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1항)에 준함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1항)

- 검사항목 :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③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④ 구강검진 ⑤ 건강위험평가  
⑥ 인지기능장애 검사 ⑦ 1차 검진 결과 상담

※ 위 항목은 직장건강검진 기준과 같으나, 연령에 따라 일부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 제2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

■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

- 결핵검진 : 매년 실시(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咯痰)의 결핵균 검사 등) 하되,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된 보육교직원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

- 잠복결핵검진 :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 출처 :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사업안내

1-2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있다.
- ② 보육교직원이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
- ③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b>확인방법</b>	기록, 관찰, 면담	<b>충족여부</b>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3개의 평정기준(①~③)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발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보호자에게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8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신고 필요 감염병)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기타 감염병

**2018 보육사업안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

\* 가장 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이용문의 : 1577-2514 또는 <http://idolbom.go.kr>)

▶ 확인방법 ◀

→ [1-2-①] 기록

-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 관련 문서(※필수 기재사항 모두 포함 유무 확인)
  - 필수 기재사항 : ❶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예: 수두, 볼거리, 홍역, 수족구, 독감, 뇌염 등)의 증상 ❷ 등원하지 않아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기간 ❸ 영유아나 교직원이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의 대처방법
  - ※ 감염병 관련 내용 중심으로 평정하며, 식중독에 대한 내용만 누락된 경우 평정에는 반영하지 않으나 보완 개선하도록 안내

→ [1-2-②] 관찰, 면담

- 어린이집 운영 시 감염병 관리수칙 준수 여부
-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 숙지 여부 : 원장, 보육교사 1인 면담
  - 영유아가 식중독 및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부모가 감염병에 걸린 영유아를 등원시킬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교사 자신이 감염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1-2-③] 기록

-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안내한 자료(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자료, 게시판 등)
  - 안내 내용(예시) : 식중독 및 감염병의 증상 및 예방방법, 대처방법(어린이집 등원 등)
- ▶ 모니터링월 기준 3개월 이내 1회 이상 안내한 자료가 있으면 ‘Y’ 평정하되,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검토기간 이전 기록도 반영하여 평정 가능
  - ※ (예시) 2018년 7월 모니터링 어린이집의 경우 기록 검토기간은 2018년 4월~7월이나, 3월에 감염병 관리방법을 가정에 안내한 자료가 있는 경우 1분기(3,4,5월)에 1회 안내하였고, 2분기(6,7,8월)가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Y’ 평정

〈참고〉

■ 감염병 및 식중독 관리 수칙(예시)

- 감염성(전염성) 질환 관리
  - 매일 등하원시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 다음의 증상을 유의하여 본다(평소와 다른 행동, 기침, 발열, 식욕저하, 충혈, 설사, 잠만 자려고 함, 발진, 구토)
  -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감염된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한다.
  -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제공한다.

-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있지 못할 만큼 영유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서 보호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 가능한 아픈 영유아와 건강한 영유아를 격리하여 보호한다.
  - 한 명의 어린이집 교사가 전담하여 아픈 영유아를 돌본다.
  - 아픈 영유아가 가지고 놀 장난감은 구별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소독한다.
  -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영유아가 아픈 상태이지만 어린이집에 있어도 될 정도의 상태라면 다음의 사항을 지키도록 합니다.
  - 영유아가 자주 손을 씻게 도와준다.
  - 어린이집 교사도 자주 손을 씻는다.
  - 아픈 영유아가 함께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놀이시설 및 장난감을 자주 소독한다.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성(전염성) 질환의 증상

종류	증상
수족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으로 시작, 열이 나기 시작한 1~2일후 구강 통증성 피부병변이 혀, 잇몸, 뺨의 안쪽에서 발생, 작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물집, 궤양으로 발전하며, 가려움이 없는 피부발진이 손바닥, 발바닥에 나타남</li> <li>• 잠복기 수일~수주</li> </ul>
독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8°C 이상의 전신 증상(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li> <li>• 잠복기 수일~수주</li> </ul>
수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진 발생 1~2일 전부터 권태감, 미열 동반, 24시간 내에 반점, 구진, 수포, 농포, 딱지의 순으로 진행</li> <li>• 발진은 몸통, 두피, 얼굴에 발생하고 매우 가려움</li> <li>• 잠복기 수일~수주</li> </ul>
볼거리 (유행성이하 선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 증상을 보이다가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등에 염증 발생</li> <li>• 잠복기 수일~수주</li> </ul>
홍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병변, 이후 홍반성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짐</li> <li>• 발진은 3일 이상 지속</li> <li>• 잠복기 수일~수주</li> </ul>
뇌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통, 발열, 오한, 구토, 의식저하, 혼미, 시력저하, 간질, 발작 등</li> </ul>

- 격리(등원 제한)가 필요한 경우
  - 발열과 함께 구역질, 구토 등이 있을 때
  - 열과 함께 몸에 발진이 돋았을 때
  - 설사(두 번 이상 변을 보았다거나 평소 배변습관에서 변화를 보인 경우)를 하는 경우
  - 최근 24시간 내 두 번 이상의 구토가 있었을 경우
  - 피부나 눈에 황달이 관찰된 경우
  - 영유아가 계속 보채고 달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 경우
-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단순 감기,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중이염, 단지 열만 나는 경우, 제5병(감염홍반), B형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분비물이 없는 총혈, 아구창
- 격리(등원 제한)가 필요한 기간

종류	격리 기간
설사	• 설사를 마친 후 24시간
머릿니	• 첫 치료 시작 후 24시간
A형 간염	• 황달 시작 시점에서 7일간
농가진	• 항생제 사용 시작시점에서 24시간
독감	• 증상 시작 후 5일간
홍역	• 발진 발생 후 5일간
뇌막염	• 의사에 의해 괜찮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	• 볼이 붓기 시작 시점에서 9일간
백일해	• 항생제 사용 시작 시점에서 5일간 • 항생제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면 3주간
폐렴	• 의사에 의해 괜찮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풍진	• 발진 발생 후 7일간
옴	• 치료 시작 시점에서 24시간
성홍열	• 항생제 사용 시작 시점에서 24시간
이질	• 대변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인 경우
결핵	• 결핵 전문 소아청소년과 상담
구토	• 구토가 멎을 때까지
수두	• 발진 발생 후 5일 •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딱지가 다 생길 때까지

\*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6). 어린이집안전관리백과 건강·환경·위생·급식

### 식중독 발생 시 위기 대응

#### 〈식중독 발생 신고 요령〉

- ◎ 식중독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중독 예방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http://www.mfds.go.kr/fm/index.do>)

1-3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 ①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다.
- ②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를 관리하고 있다.

확인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따라서 어린이집은 가까운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연락망을 비치하고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 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 확인방법 ◀

→ [1-3-①] 기록

-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 비치 확인(눈에 잘 띄는 곳 비치 유무 확인)

→ [1-3-②] 기록

-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필수기재사항 모두 포함 유무 확인)

- 필수기재사항 : ① 보호자 비상연락망 ② 의료기관명\*

\* 의료기관명에는 응급상황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응급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모가 작성하여 동의한 내용이므로 의료기관의 적합 유무는 평정에 반영하지 않고 보완·개선하도록 안내

- ▶ 영유아 현원의 90% 이상 응급처치동의서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Y' 로 평정

< 참고 >

<부모동의 및 조사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사업지침 등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내용에 동의여부를 빠짐없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기본 정보>

성명	(남/여)	반이름	
주소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영유아와의 관계	연락처

1.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

구분	처리내용
응급처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필요시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input type="checkbox"/> 기관지정 의료기관( )이나 <input type="checkbox"/> 보호지정 의료기관( )으로 수송해주시십시오.
귀가동의	- 위 영유아의 귀가 시 위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 정해진 보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영유아가 13세 미만(초등학생) 형제·자매와만 등·하원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하원방법 :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동행 <input type="checkbox"/> 차량(어린이집) - 차량이용시 등하원 시간 : 등원( 시 분), 하원( 시 분) (필요 시 기재) - 부모외 인계보호자 : (필요시 기재)

2.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

\*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여부 : 참여하지 않음  참여함(해당경우에만 아래 서식 작성)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명칭	내용	실시 횟수 (주·월)	요일	운영시간	비용(원)	
		회		~		
		회		~		
		회		~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음

3. 식품알레르기 조사

어린이집 급·간식 제공 시 식품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영유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 해당식품과 대체가능 식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알레르기 여부	알레르기 유발 식품	알레르기 증상	대체가능 식품

※ 현재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없으나 이후 증상이 발생 할 경우, 반드시 어린이집으로 관련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활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 3자 제공”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영유아 및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강검진정보, 사진 등	영유아보육활동, 건강관리, 가정과의 연계 긴급한 상황 시 대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CCTV 영상 확인 요청자	CCTV 영상	아동의 사고 시 발생 상황 파악	영상을 확인하는 기간 (보조매체로 인해 영상을 보관할 경우 영상 저장 시, 보유기간을 정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어린이집 운영내용 확인 및 협조사항**

- 신입 및 재원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운영안내서)을 통해 안내해드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모님들의 협조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우리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00어린이집 모든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
2. 어린이집의 개방원칙 및 인계규정
3. 감염병 질환의 예방과 관리대책
4.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환아처리지침, 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등)
5. 부모동의 및 조사서 작성 안내(귀가동의, 응급처지동의, 식품알레르기 관련, 개인정보활용 등)
6.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안내
7.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이 갖는 책임한계에 관한 규정
8.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맞춤형 운영기준 포함)
9.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아동학대 예방지침 포함)

※ 위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00어린이집(00-000-0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유아명 :                      보호자(서명):

\* 출처 :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사업안내

1-4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 ①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
-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응급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약품(의약품 반드시 포함)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이외에 외부활동용 비상약품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으며, 견학, 산책 등 외부활동 시 실제 가지고 나가는 등 활용해야 함(소독제, 밴드류 등). 또한 어린이집에 구비된 모든 약품에는 종류별로 사용(유효)기한을 표기하고, 사용(유효)기한 내로 관리해야 함

▶ 확인방법 ◀

→ [1-4-①] 관찰

- 비상약품의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 구비 여부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구기로 갖추어야 할 내용물〉

비상약품(외용제)	간이 의료기구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체온계

\* 출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6). 어린이집안전관리백과 건강·환경·위생·급식

※ 비상약품의 종류는 예시로 이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비상약품의 종류는 어린이집에서 관련 규정과 필요에 따라 구비 가능

→ [1-4-②] 관찰

- 어린이집 내 모든 비상약품의 사용(유효)기한 준수
  - 교사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약품도 어린이집 비상약품함에 같이 보관하는 경우 유효기한을 관리해야 함. 단, 교사가 개인적으로 소지하며 사용하는 약품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 사용(유효)기한 적용받지 않는 비상약품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1-5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 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
-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

<b>확인방법</b>	기록, 관찰	<b>충족여부</b>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해야 하며,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보관방법(상온, 냉장보관 등)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보관해야 함. 또한 투약한 내용은 기록하여 부모에게 보고해야 함

□ 근거

**2018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해열제·감기약 등을 투약할 경우 미리 <서식II-3>에 의한 부모의 투약의뢰서 또는 부모의 투약요청 의사를 확인(유선 등)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 가능 시 투약 실시

※ 투약 시 약품에 기재된 투약기준(용법, 용량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확인방법** ◀

→ [1-5-①] 기록, 관찰

- 투약의뢰 관련 기록(※필수기재사항 모두 포함 유무 확인)
  - 필수기재사항 : ❶ 투약하는 약의 용량 ❷ 시간(횟수) ❸ 의뢰자
  - 투약의뢰서는 별도의 문서양식, 알림장(대화수첩), 문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알림장) 등 사용 가능
    - ※ 유선으로 투약의뢰를 요청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부모가 유선으로 요청하더라도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여 휴대폰 문자나 스마트 알림장 등으로 투약의뢰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
-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른 투약 실시 여부, 약의 보관방법(상온, 냉장보관 등) 준수
- ▶ 모니터링 당일 투약하는 영유아가 없어 관찰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근 1주일 간 투약의뢰 기록을 확인하여 평정(투약이 이루어진 1개반 선정)하되, 기록이 누락되거나 필수기재사항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검토 대상의 50% 이상일 경우 'N' 평정
- ▶ 모니터링 당일 투약의뢰 관련 기록 없이 투약이 이루어지거나, 투약을 위해 가정에서 가져온 냉장보관 약을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 'N' 평정

→ [1-5-②] 기록

- 투약보고 관련 기록(※필수기재사항 모두 포함 유무 확인)
  - 필수기재사항 : ❶ 투약 여부, ❷ 투약자(확인)
  - 투약 보고는 별도의 문서양식, 알림장(대화수첩), 문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알림장) 등 사용 가능
  - 투약 여부의 경우, 투약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한 것은 모두 인정(O/X, 투약 시각 등)

**영역 2 안전관리**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나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다.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시설 및 설비, 놀잇감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등·하원 차량은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가정에 관련 안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역	내용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확인자료
2. 안전관리 (8)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		
	2-2.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	○		비상시 대처방안
	2-3.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영유아 안전교육·소방훈련 계획 및 실시기록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기록
	2-4.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	○	○	귀가동의서
	2-5.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	○	○	○	통학차량 신고필증 차량안전점검표 차량안전수칙
	2-6.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알고 있다.	○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기록
	2-7.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			○	
	2-8.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 하도록 안내한다.	○			가정통신문 등

영역 등급 평정기준	
우 수	8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8개
양 호	8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5~7개
개선필요	8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1~4개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 ② 실내외 놀잇감이 파손된 부분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 ③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①의 경우 5개의 구성요소( ①~⑤ ) 중 4개 이상 충족해야 'Y'로 평정</li> <li>▶ 3개의 평정기준( ①~③ )을 충족해야 'Y'로 평정</li> </ul>				

▶ 지표설명 ◀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시설 및 설비는 위험요인 없이 안전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전선, 세면대와 정수기에서 나오는 온수 등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또한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은 영유아의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요인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또한 실내외 놀잇감은 파손되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고 재질이 유해하지 않으며,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특히 영아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가 없도록 보육실 내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1**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 확인방법 ◀

### → [2-1-①] 관찰

- 2-1-①의 경우 5개의 구성요소( ①~⑤ ) 중 4개 이상 충족해야 ‘Y’로 평정
- 실내외 시설·설비의 안전 관리
  - ①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 등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음
    - 모든 출입문(예: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모든 출입문 문턱은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마감되어 있음
    -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실내 공간(2층 이상)의 모든 창문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천장, 바닥, 벽면 등에 균열이 없으며, 날카로운 못 등이 돌출되어 있지 않음
    - 바닥은 장판이 들뜨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설치되어 있음
    - 계단이나 화장실, 세면장 등의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 ② 전기설비 및 전선줄 등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이동식 콘센트 포함)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덮개로 덮여져 있음
    -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실내외 공간의 전선줄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음

- ③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가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고정식 시설·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확인
    -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선반 등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음
    - 에어컨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선풍기에는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블라인드는 줄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되어 있음
    - 온열기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돌출형 라디에이터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계절에 관계없이 적절한 안전 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 화기시설, 가스밸브 등에는 적절한 보호 장치가 되어 있음
    - 세면대의 수도꼭지 등에 파손된 곳이 없고 표면은 거칠지 않고 매끄러움
    - 샤워기 줄은 영유아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음
    - 유희실이나 실내놀이터의 고정식 놀이기구(예: 고정식 미끄럼틀, 볼풀장 등)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음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이동식 시설·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확인
    - 책상, 의자, 활동자료장 등의 가구는 파손된 곳이 없고,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거나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가전제품(공기청정기, 제습기, 가습기 등)은 파손된 곳이 없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흥미영역 등에 깔개가 있는 경우, 바닥이 평평하며 찢어진 곳이 없음
  - 실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확인
    - 옥외놀이터의 바닥면은 평평하며, 웅덩이, 요철 등이 없음
    - 옥외놀이터에 설치된 고정식 놀이기구는 파손된 곳이 없고 안전함
    - 어린이집 건물의 외부에 놓여있는 에어컨 실외기, LPG 가스통 등은 영유아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음
    -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적재물(목재더미, 파손된 가구 등)이 없거나, 있을 경우 영유아 활동공간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

- ④ 세면대, 정수기 등에 온수 조절 장치가 적절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 보육실, 화장실, 세면장 등에 설치된 세면대, 정수기에서 뜨거운 온수가 나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없도록 온수 조절을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 ⑤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는다.
  - 조리실, 보일러실, 자료실, 덤웨이터(요리 및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영유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함
    - ※ 어린이집 구조 상 부엌 등의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유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함

→ [2-1-②] 관찰

-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한 관리
  - 보육실을 포함한 실내외 공간의 모든 놀잇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확인
    - 놀잇감은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으며, 파손된 부분이 없음
    - 놀잇감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이 파손되어 날카로운 면이 드러나 있지 않음
    -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이동식 놀이기구(평균대, 뿔뜰, 자전거, 탈 것 등)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한 상태임

→ [2-1-③] 관찰

-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 관리
  - 보육실을 포함한 실내외 공간의 모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 손이 닿는 위치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사용하는지 확인
  - 영아(만0~2세)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가 있지 않은지 확인

**<참고>**

■ 위험한 물건의 예

- 칼, 성인용 가위, 송곳, 스테이플러, 칼날이 드러나 있는 테이프커터기 등 작업 시 자르거나 찌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
-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살충제, 방향제, 어항수질 개선제, 각종 스프레이, 칩핀, 건전지, 놀잇감으로 제시된 화장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립스틱, 매니큐어 등) 등
-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등
- 비상약품함,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 만지면 다칠 수 있는 가시가 있는 식물(예 : 선인장, 밤송이 등)
- 삽, 호미 등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
- 영아(만0~2세)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
  - 직경 3.5cm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예 : 블록이나 구슬, 솜공 등)
  - 직접 활동자료로 제공되거나, 영아가 쉽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는 크기가 작은 자연물(예 : 콩, 팥, 은행, 도토리 등)
- 전기포트, 밥솥 등 영유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물건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8). 2018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2-2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관리되고 있다.
- ②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대피요령, 비상대피도, 업무분장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 되어 있다.

확인방법	기록, 관찰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2개의 평정기준(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 비상구, 비상 대피로 등)은 비상시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비상사태를 대비한 설비(피난구 유도등, 소화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는 비상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또한 비상시 대처방안(대피요령, 비상대피도, 비상 시 보육교직원의 역할분담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1**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대피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생략). ③ 그 밖의 소방 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생략)

**2018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함

▶ 확인방법 ◀

→ [2-2-①] 관찰

- 비상사태 대비 시설 및 설비의 설치·관리 여부
  -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는 언제나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함
  -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어야 함
  - 비상구나 비상계단에는 적재물 등이 없이 비상 시 원활히 대피할 수 있게 관리되어야 하며, 비상대피로에는 위험한 물건이 없도록 관리함
  - 소화기는 각 층별로 최소 1대 이상 비치해야 하고, 구비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는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방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함
    - ※ 소화기는 압력이 정상일 경우 녹색, 과충전 시 적색, 압력 미만 시 흰색 또는 노란색을 가리킴. 소화기 압력계의 지시침이 흰색 또는 노란색인 경우 정상 사용이 어려우므로 'N' 평정. 적색(과충전)인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분사 시 주의가 필요하므로 'Y' 평정 하되, 소화기를 정상 상태로 관리하도록 안내 필요
    - ※ 투척용소화기는 '간이소화용구'로서 어린이집에서는 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피난구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 ▶ 어린이집 내 유도등이 전혀 없거나, 설치되어 있는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N' 평정
- ▶ 아파트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아파트 건물 내에 설치된 유도등의 작동여부로 평정하며, 어린이집 내 유도등 미설치는 'N' 평정 사유 아님
  - 가스누설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
    - ※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 설치하여 사용, 가스보일러 미사용)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하지 않아도 됨

→ [2-2-②] 기록

- 화재 등 비상시 대처방안 마련 여부(※필수기재사항 모두 포함 유무 확인)
  - 필수기재사항 : ❶ 대피요령 ❷ 보육교직원의 역할 분담표 ❸ 비상대피도

〈참고〉

■ 비상시 대처방안 관련 서식의 예

보육교직원 업무분장

담당	일반 업무 내용	환경정리 구역	비상 시 업무 내용
원장	예시) • 원의 전반적인 교육 및 운영 계획 / 견학 및 행사계획 • 업무분장, 감독, 근무평정 등 업무관리 • 시설설비 및 재정 관리 / 운영 및 교육 정보 수집	전체 청소, 구역 관리	
교사 공동	예시) • 보육활동 진행 및 준비 / 보육일지 작성 • 각 보육실의 환경 구성 및 청결 관리 / 학부모 상담 • 영유아에 대한 관찰 일지 및 보고서 작성	담당 교실 관리	
000	예시) • 영아반의 전반적인 교육내용 관리 • 연간보육계획안, 주간보육계획안, 일일보육계획안 작성 • 원아 관리 및 관찰지도 / 소모성 교재 점검 및 신청	계단 청소	
000	예시) • 입학상담 및 자원봉사자 담당 / 위생 소독 • 식단표작성 및 주문 담당 / 화분 관리	화장실 청소 화장실 수건 관리	
000	예시) • 시청각 기자재관리 (OHP, 빔프로젝터, 비디오 카메라 등) • 안전관리(소화기 점검), 비상 대피 훈련 담당		

비상시 대피요령

- 침착하게 대처한다.
- 총 지휘자에게 보고한다.
- 119 등 필요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비상대피로를 확보한다.
- 교직원은 비상시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한다.
- 원아를 신속하게 인솔에서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 남은 원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영유아들을 안정시킨다.

\* 출처: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사업안내

〈참고〉

■ 소화기 관리 방법

- 제조일자, 제조 회사명,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있는지, 국가검정스티커가 붙어있는지 확인한다.
- 외관상으로 녹이 슬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다.
- 약제가 굳지는 않았는지, 거꾸로 흔들어서 미세한 분말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지 확인한다.
-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 소화기와 소화기 점검표를 함께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한다.

① 소화기 구조



■ 압력계 점검 방법

- 점검은 소화기에 부착된 압력계의 지시침을 확인한다.
- 지시침은 정상상태 시 녹색부분을, 이상차압상태 시 적색부분을, 압력 미만 상태 시 흰색 또는 노란색 부분을 가리킨다.
- 예외적으로 탄산가스 소화기는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압력이 외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소화약제는 탄산가스소화기, 하론소화기, 분말소화기 등 모두 소화기 몸체에 약제의 중량과 소화기의 총 중량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소화기의 중량을 측정하여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2016).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 소방·재난·자연재해

2-3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소방 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①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 ②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방(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확인방법	기록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요령,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별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소방(대피) 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정기 소방훈련 이외 비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호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2018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 1회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2018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 및 이수해야 함.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확인방법 ◀

→ [2-3-①] 기록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여부
  - 영유아 안전교육(3가지 이상) 계획 및 실시 여부 : 연간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확인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연 1회 이상 참여 여부(외부기관 및 어린이집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등 모두 포함) : 운영일지, 교사연수대장 등 확인
- ▶ 모니터링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검토
 

(예시) 2018년 5월 모니터링 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 5월~2018년 5월에 이루어진 안전교육

  - 영유아: 모니터링월 기준 1년 이내에 3가지 이상 안전교육 실시
  - 보육교직원: 모니터링월 기준 1년 이내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외의 안전교육 1회 이상 실시
- ▶ 안전교육 실시 대상 보육교직원은 임용된 종일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평정하며, 최근 입사(1개월 이내)한 보육교사는 평정대상에서 제외

→ [2-3-②] 기록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소방(대피)훈련 월 1회 이상 실시 여부 : 보육일지 확인
  - 지진 등 재난 대피훈련도 포함 가능

〈참고〉

〈 안전교육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구분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 몸의 소중함</li> <li>2. 내 몸의 정확한 명칭</li> <li>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li> <li>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li> <li>2.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li> <li>3. 유괴법에 대한 개념</li> <li>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li> <li>2. 예방접종의 이해</li> <li>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li> <li>4.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li> <li>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li> <li>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li> <li>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li> <li>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li> <li>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li> <li>4. 화재 시 대처법</li> <li>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li> <li>2. 안전한 도로 횡단법</li> <li>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li> <li>4. 날씨와 보행안전</li> <li>5. 어른과 손잡고 걷기</li> </ol>
교육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li> <li>3. 시청각 교육</li> <li>4.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li> <li>3. 시청각 교육</li> <li>4.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시청각 교육</li> <li>3.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시청각 교육</li> <li>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li> <li>4.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시청각 교육</li> <li>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li> <li>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교육</li> </ol>

\* 출처 :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사업안내

2-4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 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
- 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안전사고는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인적 환경이 미비하여 발생할 수 있다. 다수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귀가할 때 혼잡한 틈에 안전사고(예 : 미아, 유괴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귀가할 때 반드시 보호자를 확인하고 영유아를 인계하여야 함. 따라서 영유아의 등·하원 시 반드시 보호자와 교사 간의 인계과정이 필요하며, 보호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귀가동의서에 따라 보호자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함. 또한 영유아를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보호자의 전화 또는 서명 확인이 필요함

▶ 확인방법 ◀

→ [2-4-①] 기록

- 귀가동의서 구비 여부(※필수 기재사항 포함 유무 확인)
  - 필수 기재사항 : ① 영유아의 이름 ②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③ 관계 및 연락처 ④ 보호자의 서명
  - ※ 귀가동의서는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부모동의 및 조사서'를 활용하여 기록 가능
  - ※ 귀가동의서는 현원의 90%이상 구비시 'Y' 평정(현원이 1~10명: 1명 제외, 현원 11~20명 : 2명 제외 등)

→ [2-4-②] 관찰, 면담

-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 확인
  - 등·하원 인계과정 관찰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인계과정에 대한 절차 면담으로 확인
  - ※ 영유아는 절대 혼자 귀가시키지 않아야 함
  - 귀가동의서에 명시한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보호자의 전화 또는 서명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2-5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

- 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 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다.
- ② 모든 통학차량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차량안전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 ③ 모든 통학차량에 대해 매일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 ④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
- ⑤ 차량운전자와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은 차량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다.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충족여부	□ Y	□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의 평정기준(①~⑤)을 충족해야 Y로 평정</li> <li>▶ 통학차량 미운행 시, 5개의 평정기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감안하여 'Y' 평정</li> </ul>				

▶ 지표설명 ◀

통학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또한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유아와 교사는 개별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함.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호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확인방법** ◀

- 통학차량 미운행 시, 5개의 평가기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감안하여 ‘Y’ 평정

→ [2-5-①] 기록

-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 구비 여부

→ [2-5-②] 관찰

- 모든 통학차량에 안전수칙 게시 및 차량안전 설비 구비 여부
  - 차량 내부에 차량안전수칙 부착
    - 안전수칙에는 운전자 및 동승교사의 차량운행 관련 준수사항, 영유아 안전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차량 내부에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가 구비되어 있음
    - 영아용 보호장구와 개별 안전띠는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충분함
      -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아용 보호장구와 개별 안전띠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차량을 이용하는 영아 수만큼 영아용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 단, 36개월 미만 영아가 15kg 이상인 경우에 한해 W3 제품 사용 가능함
      - ※ 영아용 보호장구에 ‘검’ 또는 ‘KPS’ 마크가 있는 경우, ‘KC’ 안전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영아용 보호장구에 ‘YW1, YW2(4~18kg이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안전인증(W1, W2)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YW기준은 현행 안전인증검사 기준(W1,2,3)이전에 사용하던 기준)
- ▶ 영아용 보호장구는 마련되어 있으나, 해당 조건(KC, W1, W2)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는 탑승하는 영아 수보다 보호장구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 ‘N’ 평정
  - 차량 내부에 차량용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구비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의 안전핀이 빠져 있지 않고, 소방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
  - 차량 내부에 비상약품이 구비되어 있고,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되고 있음.

→ [2-5-③] 기록

- 모든 통학차량에 대해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차량별로 차량안전점검표 기록을 확인하여 평정(※차량운행 하지 않은 기간 제외)
- ▶ 모니터링 월 기준 1개월간의 기록을 확인하며, 하루라도 누락 시 ‘N’ 평정. 2018년 6월 모니터링 시, 5월부터 모니터링 전일까지의 기록 확인

→ [2-5-④] 관찰, 면담

-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 동승 및 안전 운행 여부
  - 모니터링 당일 관찰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면담으로 확인
    - 차량운행 시, 운전자 외 성인이 동승하는지 여부
    - 운전자가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운전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는지 여부
- ▶ 차량운행 시, 운전자 외 성인(원장, 교사 등)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 “N” 평정

→ [2-5-⑤] 면담

- 차량운전자와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의 차량안전 수칙 숙지 여부
  - 차량운전자 및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 1인 면담
    - 차량안전수칙(승차 시, 운행 중, 하차 시)을 숙지하고 있나요?
    - 차량에 탑승한 교사(성인)와 모든 영유아는 개별 안전띠(또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나요?
    - 탑승 교사(성인) 및 영유아가 모두 개별 안전띠를 착용한 후 차량을 출발시킵니까?
    - 차량에 탑승한 교사(성인)는 마지막에 모든 영유아가 차에서 내렸는지 확인하고 하차하나요?

< 참고 >

차량안전점검표(예시)

(점검상태 :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운행 전 점검	- 차량 외부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한다.							
	- 차량 내 소화기·비상약품이 비치여부 및 비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차량시동 후 엔진 및 각종계기판 이상 유, 무를 확인한다.							
	-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 차량 출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문단속을 확인하고 전·후방 사각지대에 영유아 또는 장애 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운행 중 점검	- 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보육교사 등)이 탑승하는가?							
	-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영유아가 있는가?							
	-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 정차는 후방의 차량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곳에 한다.							
	-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운행 후 점검	-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양호한가?							
	-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 차량 내 영유아가 전원 하차 하였는지 확인한다.							

\* 출처 :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사업 안내.

< 참고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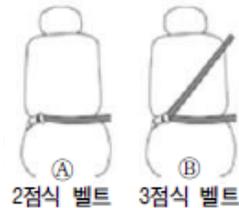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의 올바른 선택방법**

**1.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란?**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시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차량에 붙어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

**2.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선택 방법은?**

- 1) 먼저 통학차량의 승객석 안전벨트 종류를 확인한다.  
(A 2점식 안전벨트 B 3점식 안전벨트)
- 2) 확인된 안전벨트 종류에 맞는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선택한다.  
A 2점식 벨트 → W2  
B 3점식 벨트 → W1, W2
- 3) 안전인증(KC)된 제품인지 확인한다(안전인증서, 인증번호).
- 4) 제품 사용설명서를 설치 전 자세히 읽어보고, 안전하게 장착한다.



**3. 안전인증(KC)이란?**



안전인증번호 : 00000000



2011년 이전에 실시한  
공산품 안전인증 마크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7항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사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 검사기준

구 분	체중 범위(kg)
W1	10kg 미만
W2	9kg ~ 18kg 이하
W3	15kg ~ 25kg 이하
W4	22kg 이상

※ '영아용 보호장구'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중 영아의 체중범위에 해당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을 선택, 사용하여야 함.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8). 2018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 참고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 운전자 매뉴얼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속도를 줄여 운행한다.

• 승차 시

- ①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②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 ③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시키는지 확인한다.
- ④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는지 확인한다.
- ⑤ 모두 승차하고 동승보호자가 문을 닫으면 출발을 알린다.
- ⑥ 광각실외후사경 등을 확인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⑦ 다른 어린이가 있는 경우 동승보호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 ⑧ 안전하게 서서히 출발한다.

• 운행 중

-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서행하면서 동승자에게 즉시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 확인한다.

• 하차 시

- ① 차를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 ② 기어를 주차(수동일 경우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후 동승보호자에게 알린다.
- ③ 동승보호자에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도록 한다.
- ④ 동승보호자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리도록 한다.
- ⑤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확인한다.
- ⑥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너도록 한다)
- ⑦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⑧ 차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한다.

□ 동승보호자 매뉴얼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승차 시

-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 ②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 시킨다.
- ③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준다.
- ④ 주변에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 ⑤ 모두 승차하면 문을 닫는다.
- ⑥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차량 운행 중

-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즉시 매준다.
-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하차 시

-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 ② 어린이 안전띠를 풀어준다.
- ③ 오토바이·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고, 먼저 하차한다.
- ④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 한다.
- ⑤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 ⑥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⑦ 차문을 닫고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출처 :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사업 안내

2-6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알고 있다.

-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 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
- ②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다.

확인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 및 이수하도록 함. 또한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112)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확인방법 ◀

→ [2-6-①] 기록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 존중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이 연 1회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
      - \* 시간연장교사, 보조교사, 조리사(조리원), 차량기사, 사무원 등
      - \* 최근 입사(1개월 이내)한 보육교직원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 외부기관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인 경우 수료증(이수증)으로 확인
    - 어린이집 자체교육은 교육 내용 관련 기록 확인(교사교육보고서나 운영일지 등)
- ▶ 모니터링 월 기준으로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2-6-②] 면담

-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장기결석 아동 인지 및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 숙지 여부 확인(보육교직원 2인 면담)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학대피해아동을 보았거나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참고〉

■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 (개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유형) 영유아기의 학대는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됨. 아동학대는 대부분 주양육자인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성학대를 제외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에서 부모에 의한 발생률은 80%이상임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임
-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이동 던짐,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정서학대는 두드러지게 보이거나 그 결과가 바로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함

-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

-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 성교를 하는 행위
-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함

- ▶ 물리적 방임: 영유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경우, 상한 음식먹이기 등이 포함
-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을 방치하며 하루일과를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영유아들을 한곳에 그냥 방치하고 교사가 함께하지 않는 경우
-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며, 분노와 두려움,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감 상실 등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됨. 특히,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

※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or.kr>)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의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 교사 직군 :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

■ 신고방법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12(24시간 신고접수)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무단결석 아동 및 퇴학 아동 관리 강화 〉

- **(무단결석)** 2일 이상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
  - ※ 가정방문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퇴학)** 명확한 사유 없이 퇴학 신청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

〈 무단결석 아동 관리·대응 매뉴얼 〉

결석 당일	<p><b>(담임교사)</b>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을 확인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원장·원감에게 보고하고, 유선연락 지속 실시</p> <p><b>(행정사항)</b>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작성(서식 I)</p>
2일	<p><b>(원장)</b> - 수시로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 -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가정방문은 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가정 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p> <p>※ 출석하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가정방문 실시</p> <p><b>(행정사항)</b>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작성(서식 I) 무단결석 아동 중 아동학대 신고현황 교육청/시군구보고(서식II)</p>
사후 관리	<p><b>(원장, 담임교사)</b>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평소 아동의 상태 등에 대해 안내하고 기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p> <p><b>(담임교사)</b> 무단결석한 아동이 재 등원하였을 경우,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p> <p><b>(원장)</b> 해당 보호자에 대해서 면담 또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p>

\* 출처 :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

2-7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

확인방법	면담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1개의 평정기준 ( ①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 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확인방법 ◀

→ [2-7-①] 면담

-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존중 인지 여부(보육교직원 2인 면담)
  -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인지 및 실천 유무 확인

**<참고>**

■ 영유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의 예

- 부드럽게 영유아의 이름 부르기
- 영유아의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아직 젓가락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익숙해지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거야”  
“OO이는 정리를 꼼꼼하게 하네”
- 영유아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기  
“그 방법도 좋은 생각이네”, “그런 방법도 괜찮은 걸?”
- 영유아의 실수도 이해하고 존중하기  
(혼자 컵에 물을 따르다 물을 었지른 영아에게)  
“OO이가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 해보려고 했구나”
- 눈높이 맞추기, 따뜻하고 즐거운 표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는 행동 등

■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의 예

-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야! 너! 애!” 등으로 위협적으로 부르는 경우
  - 표면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지만 영유아를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 대화 시 얼굴을 쳐다보지 않음, 짜증내는 표정, 비웃음,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 등
-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8). 2018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2-8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①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가정에 안내하고 있다.

확인방법	기록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1개의 평정기준 ( ①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도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이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의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권리존중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친권상실청구)**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 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확인방법 ◀

→ [2-8-①] 기록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실천 관련 안내자료 확인
  - 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게시판, 부모교육자료 등을 통해 확인

**영역 3** 급식관리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하고 다양한 식재료로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식단을 계획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식자재는 보관규정을 준수하여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는 청결하게 관리하여 식중독과 질병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영역	내용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확인자료
3. 급식관리 (5)	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	○		식단표 (급간식 시행 기록)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식품 알레르기 조사자료, 반영여부 기록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		-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		-
	3-5.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영역 등급 평정기준**

우 수	5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5개
양 호	5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3~4개
개선필요	5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1~2개

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
- 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
- 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b>확인방법</b>	기록, 관찰	<b>충족여부</b>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3개의 평정기준( ①~③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급·간식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함.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제공하되, 재료를 구입할 수 없거나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 식품군 내에서 일부 변경이 가능함. 이때는 운영일지 등에 급·간식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또한 간식은 영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열량 보충과 영양의 균형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제공하되,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여(예:생과일, 샐러드, 찐감자, 군고구마 등)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확인방법 ◀

→ [3-1-①] 기록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확인

-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식단표 출처 반드시 확인)
- 영유아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영양사 작성 여부 확인
- 급·간식 제공 기록 확인
  - 실제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 유무 및 식단표와 일치 여부 확인
    - ※ 가정에서 가져오는 이유식의 경우에도 제공 내용을 운영일지, 보육일지 등에 기록하여 관리 필요
  - 급·간식 제공 기록은 운영일지, 보육일지의 급·간식 관리 기록 외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사진 자료를 포함하여 확인 가능함
- ▣ 모니터링 월 기준으로 전 달의 식단표와 실제 제공 기록을 비교하여, 1개월 중 50%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 ‘N’ 평정
  - (예시) 2018년 5월 모니터링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4월 급·간식 제공 기록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일수 총 21일 중 11일 이상 식단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N’ 평정
    - ※ 변동사항 발생비율 산정은 급식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함
    - ※ 당일 생일잔치 등의 행사로 인해 생일잔치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식단표상의 음식은 제공해야 함

### → [3-1-②] 관찰

-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 제공 여부
  - 급·간식으로 제공된 음식물은 조각이 크지 않아 쉽게 먹을 수 있고,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맵고 짜지 않게 조리되어 자극적이지 않아야 함
  - 영유아의 연령, 개별 특성에 맞추어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배식할 음식은 여분이 있어 더 먹기를 원하는 영유아에게는 추가로 배식이 가능해야 함
    - 모니터링 당일 영유아가 더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육실 또는 조리실에 추가 배식이 가능한 음식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정

#### 〈참고〉

##### ■ 영유아 적정 배식량

- 영유아에게 충분한 적정 배식량은 「영유아 단체급식 식품·음식별 1회 제공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되, 일일 총 급·간식 횟수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어린이급식관리지침서

→ [3-1-③] 기록

- 간식을 식단표대로 1일 2회(오전과 오후) 다양하게 제공하는지 확인
  - ※ 한 주에 동일 품명의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함  
(예시) 간식으로 바나나만 일주일에 3회 제공하는 경우 'N' 평정
  - ※ 식품 첨가물(예 : 유허제, 발색제, 보존제 등)이 함유된 인스턴트식품,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과자류는 가능한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는지 확인
  - 간식 제공 기록에는 제공된 과일 및 채소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제철과일 등으로 명시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과일이나 채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 되지 않음
  - 주중 공휴일이 1일인 경우 주 3회 이상 제공되어야 하며, 주중 공휴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주 3회 미만으로 제공되더라도 평정에 반영하지 않음
  - 급식 시 후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은 간식에 포함되지 않음
  
- ▶ 모니터링 월 기준으로 전 달의 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하여,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제공된 경우 'Y' 평정  
(예시) 2018년 5월 모니터링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4월 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한 결과, 4월 1주~4주에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제공된 경우 'Y' 평정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
- 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확인방법	기록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 (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한 음식(식품 알레르기 등)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위해 영유아 별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하고,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급·간식의 조리나 배식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영유아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근거

2018 보육사업안내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입소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 확인방법 ◀

→ [3-2-①] 기록

-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 기록(알림장, 면담자료, 가정통신문 등) 확인

→ [3-2-②] 기록

-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급·간식 실시 기록(운영일지, 보육일지, 알림장 등)
  -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대체식품으로 제공 가능(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경우 확인)
- ▶ 모니터링 월 1개월 이전부터 모니터링 당일까지의 제공 기록 확인하여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조리 및 배식이 이루어진 경우 'N' 평정
  - ※ (예시) 2018년 5월 모니터링 어린이집에서 4월 5일 오전간식으로 두유가 제공되었으나, 두유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 별도의 대체식품을 제공한 기록이 없는 경우 'N' 평정

**<참고>**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

- 난류, 우유, 메밀, 호두,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닭고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를 포함한 원재료

**<식품 알레르기 식품별 주의사항 및 대체식품>**

식품	식품별 주의사항 및 대체식품
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과자나 케이크 등 기호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li> <li>• 대체식품 :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 두부, 멸치 등</li> </ul>
우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칼슘은 흡수율이 낮음. 충분한 칼슘 공급이 어려운 경우 칼슘제 섭취를 고려, 과자, 케이크, 초콜릿 등에도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의</li> <li>• 대체식품 : 두유</li> </ul>
밀, 메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식품성분표를 반드시 확인</li> <li>• 대체식품 : 쌀, 감자</li> </ul>
호두, 땅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소량으로도 반응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다른 견과류에 대한 반응도 확인해 볼 것</li> <li>• 대체식품 : 등푸른 생선(고등어, 청어), 연어 등</li> </ul>
대두(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대두를 이용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두부, 두유, 콩나물, 된장, 고추장, 간장, 콩기름, 콩기름을 이용한 튀김, 감자 등)</li> <li>* 정제된 기름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거의 포함되지 않으나 중증의 경우에는 소량으로도 반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li> <li>• 대체식품 : 두부→계란, 두유→우유, 콩나물→타채소, 된장·고추장·간장→소금, 콩기름→포도씨기름</li> </ul>
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면류, 과자, 빵 뿐만 아니라 시판용 된장, 고추장, 간장에도 함유</li> <li>• 대체식품 : 쌀, 감자</li> </ul>
생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생선을 제한하는 경우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할 수 있음</li> <li>• 대체식품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두부, 계란, 버섯 등 단백질 식품</li> </ul>
게·새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소량으로도 반응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 건새우로 육수를 내는 경우도 주의</li> <li>• 대체식품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두부, 계란, 버섯 등 단백질 식품</li> </ul>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고기를 제한하는 경우 철 흡수 저하로 빈혈을 초래할 수 있음</li> <li>• 대체식품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 단백질 식품</li> </ul>
복숭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사과, 자두, 체리, 배에도 알레르기가 반응할 수 있으므로 주의</li> <li>• 대체식품 : 수박, 참외, 사과, 채소 등 알레르기가 없는 과일</li> </ul>
토마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케첩, 토마토소스 등에 주의</li> <li>• 대체식품 : 소스류→소금, 생과/주스→타과일</li> </ul>
아황산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 주로 방부제나 식품표백제로 사용되므로 식품성과표를 반드시 확인, 간연근·간우영·간도라지 등 식품성분표가 없는 경우도 주의</li> <li>• 대체식품 : 냉동감각류, 가공감자, 말린과일, 포도주, 간연근, 간우영, 간도라지 등</li> </ul>

\* 출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http://ccfsm.foodnara.go.kr>)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 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 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 (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일에 조리하여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배식 후 남은 음식은 폐기 처리하는 등 당일 내 모두 소비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확인방법** ◀

→ [3-3-①] **관찰**

- 조리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
  -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함
  - 식재료 준비 작업은 바닥에서 하지 않고, 준비대나 조리대에서 이루어짐
  - 모든 식재료의 세척과 절단 등 전처리 작업이 청결하게 이루어짐
  - 조리 중이거나 조리된 식품은 맨손으로 만지거나 취급하지 않음
  - 조리 중 맛보기 할 경우 맛보기 손가락을 별도로 사용함

→ [3-3-②] 관찰

-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 전량 폐기 여부
  - 당일 배식 후 남은 음식을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냉장고 등)하는지 확인 (전일 식단으로 확인)
  - 영유아에게 배식된 음식은 손은 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사가 끝나면 폐기하여야 하며, 배식 후 남은 음식(잔식)은 당일소모를 원칙으로 하여 다시 배식하지 않고 전량 폐기함
  - 전일 식단표 등을 확인하여 냉장고 등에 전날 제공되었던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
  - 김치류 및 장류 등 저장음식의 경우에는 당일소모 원칙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 조리 시 주의사항

-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앞치마, 머릿수건,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한다.
- 식재료 준비 작업은 바닥에서 하지 않으며, 작업 시 맨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생장갑을 사용한다(맨손 조리 허용 작업 : 채썰기, 찢기, 껍질 벗기기, 과일 전처리).
-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귀걸이, 반지, 시계, 팔찌 등을 착용하거나, 매니큐어 등을 바르고 조리하지 않으며 조리 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감기, 설사, 손의 상처 등).
- 식재료 준비 작업 후 싱크대를 세척, 소독한 후 조리작업을 실시한다.
- 조리된 음식의 맛을 볼 때에는 별도의 맛보기 숟가락을 사용해야 한다.
-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식중독균을 완전 사멸시키거나 안전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열온도로 조리해야 한다.
- 육류, 가금류, 어패류 등을 가열처리할 때 중심부가 완전히 가열되었는지 확인하고 음식을 수시로 저어 음식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어린이급식관리지침서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 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한다.
- ② 식자재별로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
- ③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3개의 평정기준 ( ①~③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 급·간식 제공을 위해 구입한 식자재는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고 식품에 표시된 보관규정에 따라 냉동·냉장·실온보관 하며,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함. 다만, 배추 등 1차 농산물은 구입(입고)일자를 표시하여 관리함.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안 됨

□ 근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확인방법 ◀

- ▶ 어린이집 내 모든 식자재 평정대상에 포함
  - ※ 유치원, 공공기관, 사회복지관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이때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유치원용 등)가 평정대상에 포함되며, 조리실 공간 및 설비의 청결 여부도 함께 평정함
- ▶ 가정어린이집에서 살림을 병행하는 경우, 인가 공간 내 모든 식자재(살림용 개인 식자재 포함) 평정대상에 포함

→ [3-4-①] 관찰

- 식자재 보관규정(냉동, 냉장, 실온 등) 준수 여부
  - 실온(1~35℃) 보관제품의 경우 냉장보관(0~10℃)의 온도범위를 포함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하여도 보관방법 위반이 되지 않으나 냉동실에 보관하면 평정에 반영
  - 하절기에는 창고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가급적 냉장실에 보관할 것을 권장

→ [3-4-②] 관찰

- 식자재별 구입(입고)일자 기입 여부
  -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식자재는 입고일자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유통기한이 표시된 식자재를 소분하여 별도의 통에 담아서 사용할 경우 입고일을 기재하여 관리함
  -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1차 농산물(배추 등)에 대해서는 입고일을 표기하여 관리함
    - ※ 구입(입고)일자 표시 여부 등만 확인하며, 영수증 등 회계장부는 확인하지 않음

→ [3-4-③] 관찰

- 유통기한 준수 여부 확인
  - 유통기한 준수 여부 확인 시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증), 커피, 차류(티백/침출차에 한함)는 평정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된장, 고추장, 김치 등)은 유통기한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해야 함
- ▶ 식자재 보관규정(냉동, 냉장, 실온 등) 준수 및 식자재별 구입(입고)일자 기입 관련 평정 시 90% 이상 준수했다면 ‘Y’ 평정하되,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은 1건만 발생해도 ‘N’ 평정

**<참고>**

**■ 바람직한 식자재 보관방법**

- 식자재는 바닥에서 15cm 이상 띄워서 보관함
- 일반채소는 건냉한 장소에 보관함
- 전처리된 채소는 10℃ 이하에서 보관함
- 냉장식품은 10℃ 이하에서 보관함
- 신선편의식품(각종 샐러드, 절단 파인애플 등)은 5℃ 이하에서 보관함
- 생선 및 육류는 5℃ 이하에서 보관함
- 냉동식품은 -18℃ 이하에서 보관함

**■ 주식류의 최적 보관기간**

품명	보관온도(℃)	최적보관기간 (최적보관기간)	비고
쌀	15~25℃	3개월	곰팡이 발생 전까지 사용가능
보리쌀	15~25℃	3개월	
밀가루	15~25℃	3개월	
식빵	15~25℃	48시간	
건면	15~25℃	4개월	
라면	15~25℃	3개월	
시리얼	15~25℃	(6개월)	
마카로니, 스파게티	15~25℃	(2~4개월)	

**■ 채소류의 최적 보관기간**

품명	보관온도(℃)	최적보관기간 (최적보관기간)	비고
엽채류	4~6℃	1일	채소를 씻은 상태
	15~26℃	3일	채소를 씻지 않은 상태
근채류	4~6℃	2일	
	15~25℃	3개월	무 : 보관일 7일
과채류	7~10℃	5일	
	15~25℃	3일	무 : 보관일 7일
감자류, 뿌리채소류	20℃	(7~30일)	씻지 않은 상태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어린이급식관리지침서

3-5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②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 (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식자재 보관 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함

□ 근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 보육사업안내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

▶ 확인방법 ◀

→ [3-5-①] 관찰

-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
  - 식자재 보관 장소가 곰팡이나 습기가 없고 건냉함

→ [3-5-②] 관찰

- 식품과 소모품의 구분 관리 여부
  -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여건 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함

**영역 4** 위생관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조리직원의 복장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위생적인 절차로 배식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조리실과 조리도구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과 영유아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비품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역	내용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확인자료
4. 위생관리 (7)	4-1.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		○		-
	4-2.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		-
	4-3.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		○		-
	4-4. 조리실 및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		-
	4-5.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
	4-6.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
	4-7.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		○		-

**영역 등급 평정기준**

우 수	7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7개
양 호	7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4~6개
개선필요	7개 지표 중 '충족(Y)' 지표가 1~3개

**4-1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

①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 (장신구 착용 불가).

<b>확인방법</b>	관찰	<b>충족여부</b>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	-------------	---

▶ 1개의 평정기준(①)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조리사,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전용 앞치마와 전용 머릿수건 등 사용가능), 위생화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아야 함. 또한 머리카락은 위생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위생모와 위생복을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 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18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조리 직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장신구는 착용불가)

▶ **확인방법** ◀

→ [4-1-①] **관찰**

- 조리를 하는 교직원(조리원, 조리사, 조리업무를 하는 원장 등)의 위생모와 위생복, 위생화 착용 여부
  - 전용 앞치마(또는 위생복), 전용 머릿수건(또는 위생모), 조리실 전용 신발(덧신)이나 위생화를 착용함
  -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은 조리실 내에서만 사용함
    - ※ 실내 공간과 조리공간의 바닥이 구분되지 않으며, 바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신구 착용 여부 확인
  - 조리직원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4-2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 ① 급·배식 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 ②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급·배식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사는 급·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식탁(책상)을 닦고, 배식 시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도구(집게 등)를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배식 시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해야 하며, 공동접시를 사용하여 하나의 음식을 여러 명이 놓고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확인방법 ◀

→ [4-2-①] 관찰

- 급·배식 전용도구의 위생상태
  - 집게, 국자 등 급·배식 전용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함

→ [4-2-②] 관찰

- 급·배식과정의 위생 상태
  - 교사는 급·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식탁(책상)을 닦음
  - 배식 시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도구(집게, 위생장갑 등)를 사용함
    - ※ 맨손으로 음식 배식, 하나의 식기도구로 여러 가지 음식 배식, 사용하던 젓가락이나 포크 등으로 음식 배식하는 경우, 'N' 평정
  - 배식 시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함
    - ※ 공동접시를 사용하여 하나의 음식을 여러 명이 놓고 함께 먹는 경우, 'N' 평정

**4-3**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 ①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② 컵, 젖병, 젓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 (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수기를 이용할 경우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함. 또한 영아를 위한 모유나 우유, 이유식 등은 반드시 냉장보관하며, 먹다 남은 모유나 우유는 즉시 폐기함. 영유아가 사용하는 컵, 젖병, 젓꼭지 등도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 **확인방법** ◀

→ [4-3-①] **관찰**

- 식수(정수기)의 위생상태
  - 식수는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며, 정수기를 이용할 경우 정수기 쪽지와 필터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우유(모유), 이유식 등의 관리상태
  - 영아를 위한 모유와 우유는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먹다 남은 우유나 모유는 즉시 폐기함
  - 가정에서 가져 온 이유식은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먹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제공함
  - 영아를 위한 분유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함

→ [4-3-②] 관찰

● 컵, 젓병, 젓꼭지 등 관리상태

- 컵은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영유아 개별 컵 사용 시에는 보육교사가 수시로 청결 상태 확인하여 관리하며, 젓병과 젓꼭지는 1회 사용한 후 소독하여 관리함

〈참고〉

■ 정수기 관리방법

-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의 꼭지와 필터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정수기 꼭지가 외부에 노출되어 오염되기 쉬우므로 수시로 정수기 꼭지를 소독함.
- 업체 등을 통해 필터를 관리하되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기록부를 비치하여 필터 교환 시기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어린이급식관리지침서.

**4-4 조리실 및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 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4-①의 경우 3개의 구성요소( ①~③ )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Y'로 평정</li> <li>▶ 2개의 평정기준(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li> </ul>				

▶ **지표설명** ◀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조리실 내부에는 거미줄이나 먼지 등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후드나 환풍기,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또한 조리도구의 청결을 위해 식기, 도마, 칼, 행주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원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1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확인방법** ◀

→ [ 4-4-① ] **관찰**

- 4-4-①의 경우 3개의 구성요소( ①~③ )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Y'로 평정

● 조리실의 청결·위생 관리

①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의 청결·위생 상태

- 조리실 내부는 거미줄이나 먼지 등이 없고, 청결함
- 조리실 바닥은 깨끗하고, 조리과 청소가 끝난 뒤에는 건조하게 유지됨
- 조리실 바닥 하수구에서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청결함
- 조리실 벽과 천장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고, 청결함
- 조리실을 자주 환기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

② 조리실 설비 및 주방가전의 청결·위생 상태

- 조리실 내 개수대와 조리대는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개수대의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청결함
- 식기수납장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어 청결함
- 쓰레기통(음식물 등)과 그 주변이 청결함
- 조리실의 가스레인지와 주변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오븐,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믹서기 등의 가전제품은 표면과 내부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하며, 심한 냄새가 나지 않음

③ 후드·환풍기, 방충망의 설치 및 작동, 청결·위생 상태

- 조리실의 후드는 벽의 환기구에 이음새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외관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환풍기는 제대로 작동하고 외관 및 주변이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 후드나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잘 되는 경우에는 'Y' 평정함
- 조리실의 창문 및 외부로 직접 연결된 모든 문에는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으며 파손 없이 청결함
  - \*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도 방충망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음

→ [4-4-②] 관찰, 면담

● 조리도구의 청결·위생 상태

- 식기, 도마, 칼, 행주 등 조리실 비품은 사용 후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 식기는 충분히 건조하여 보관함

● 식재료별로 칼과 도마의 구분사용 확인

- 칼과 도마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4-5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 (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은 매일 청소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모든 실내 공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과 대청소를 실시하고, 현관, 복도, 통로, 계단과 창문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모든 보육실의 바닥, 창문, 교구장, 사물함 뒤편 등의 청결상태를 잘 유지하여야 함. 보육실의 놀잇감은 자주 세척,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영아들이 자주 물고 빠는 놀잇감의 경우 더욱 자주 세척하여 관리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018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 확인방법 ◀

→ [4-5-①] 관찰

- 모든 실내 공간의 청결 상태
  - 보육실 및 실내 공간(현관,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 등)의 청결 상태 확인
  - 바닥과 벽, 천장, 기둥, 출입문과 창문 등이 청결함
  - 가구, 활동자료장, 책상과 의자, 사물함 및 뒤편 구석진 곳 등에 먼지뭉치 등 없이 청결함
  - 바닥에 깔려있는 공동매트, 쿠션 등이 찌든 때 없이 청결함

- 에어컨, 선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이 청결함
- 청소에 사용되는 청소도구와 보관함, 휴지통 등이 청결함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서 해충(바퀴벌레 등)이 발견되지 않음

●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상태

- 화장실과 세면장 바닥에 물기가 거의 없이 건조하게 유지됨
- 변기 사용 후 매번 신속하게 오물(대·소변)을 처리하며, 변기가 청결하게 유지됨
- 휴지통과 그 주변이 청결함
-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이 젖었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교체하여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 [4-5-②] 관찰

● 보육실 놀잇감(바구니 포함)의 청결 상태

- 놀잇감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찌든 때가 묻어있지 않고 청결함
  -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아용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여 매일 세척함
  - 놀잇감을 넣어두는 보관함이나 바구니가 청결함
- ※ 보육실의 놀잇감 상태 확인 시 영유아 보육활동에 피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 관찰함

<참고>

■ 놀잇감 세척 방법

- 원목 놀잇감, 나무 블록은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서 건조시킴
- 형겅 놀잇감은 자주 먼지를 털어내고 주기적으로 세탁함
- 플라스틱 놀잇감은 따뜻한 비눗물에 담가 세척한 후 헹구어 말림
- 고무 놀잇감은 영유아용 세제 등을 이용해 스펀지로 닦고 말림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8). 2018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4-6**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 (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영유아별로 개별 침구(이불, 베개, 요)를 사용하며,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 일광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칫솔과 양치컵은 사용 후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칫솔 관리 시에는 영유아의 개별 칫솔이 서로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소독기 사용 시에는 소독기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018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침구, 기저귀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 **확인방법** ◀

→ [4-6-①] **관찰**

● 개별 침구 구비 및 청결 상태

- 낮잠을 자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는 개별 침구(이불, 베개, 요)를 구비해야 함
  - ※ 동일한 모양과 색깔인 경우에는 개별 구분의 표시가 있어야 함
- 놀이매트 등을 별도의 깔개 없이 침구로 사용하지 않음
- 모든 개별 침구와 여분의 침구, 침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청결함
  - ※ 여분의 침구는 사용한 후에 즉시 세탁하여 다른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함

→ [4-6-②] 관찰

- 개별 칫솔, 양치컵 구비 및 청결 상태
  - 칫솔과 양치컵은 개별 영유아별로 사용하며, 칫솔과 양치컵 사용 후에는 깨끗이 헹구고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건조시켜 매번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칫솔과 양치컵을 보관하는 곳(바구니, 쟁반, 소독기 등)도 청결상태 확인
    - ※ 영유아가 양치한 이후 바로 칫솔과 양치컵 상태를 관찰하게 될 경우 보육교사가 위생 상태를 관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청결상태 확인
    - ※ 칫솔소독기는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소독기 사용 시에는 청결 상태를 확인함

4-7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

- ① 환기가 자주 이루어져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된다.
- ②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2개의 평정기준 ( ①~② )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 내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등원 전, 놀이 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낮잠시간 후 등 일과 중 수시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또한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실 및 실내공간은 계절이나 날씨를 고려하여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2018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확인방법 ◀

→ [4-7-①] 관찰

● 보육실 수시 환기 여부

- 영유아의 등원 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놀이 후, 낮잠시간 후 등 일과 중 수시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여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함
  - ※ 주변에 공사장이 있거나, 황사·미세먼지 주의 예보 등의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하지 않을 수 있음
-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없는 경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4-7-②] 관찰

● 실내 온도의 적정 수준 유지 여부

- 필요 시 창문 개폐, 냉방기 또는 난방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
- 보육실이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지 확인

〈참고〉

■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방법

-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1년에 1회 이상 시설 내를 살균 소독함
- 환기설비, 팬,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함
- 실내를 충분히 환기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기록보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 주변의 공사장, 실외의 살충 및 제초작업, 황사나 미세먼지 주의예보 등의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보다는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해야 함
- 조리실 및 화장실의 환풍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함
-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철 결로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경우에는 곰팡이 제거제 등을 사용하여 오염부위를 제거한 후 환기를 실시하거나, 오염이 심각한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곰팡이를 제거해야 함

\* 출처 : 환경부(2011).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

## 2018 부모모니터링 서식

1.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2. 부모모니터링단 점검표
3. 컨설팅 결과보고서



# IV. 2018 부모모니터링 서식

## 1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어린이집 배부, 지자체 제출)

**☑ 어린이집 개요**

어린이집명					
소재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등	<input type="checkbox"/> 협동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직장		
원장		아동현황	정원/현원: ____ / ____		
방문일자	2018년    월    일	시작시간	:		
		종료시간	:		
방문자	(부모단원)	(서명)	어린이집 확인자	(원장)	(서명)
	(전문가단원)	(서명)			

**☑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모니터링 영역				기관등급
	1. 건강관리	2. 안전관리	3. 급식관리	4. 위생관리	
영역별 등급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총괄 의견	(예시) 모니터링 결과, 귀 어린이집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O, OO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필요 사항을 참고하시어 개선조치 하시기 바라며, 식자재에 대해서는 현장 보완 개선되었으나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과

▣ 모니터링 결과

영역	지표	개선 필요 사항
<p><b>1.</b> <b>건강관리</b></p>	<p>1-1.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관하고 있다.</p>	<p>(예시) 보육교직원 1명 건강검진서류 누락</p>
	<p>1-2.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있다. ② 보육교직원이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 ③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p>	
	<p>1-3.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다. ②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를 관리하고 있다.</p>	
	<p>1-4.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①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p>	
	<p>1-5.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p>	
<p><b>2.</b> <b>안전관리</b></p>	<p>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② 실내외 놀잇감이 파손된 부분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③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p>	

	<p>2-2.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p> <p>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관리되고 있다.</p> <p>②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대피요령, 비상대피도, 업무분장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p>	
	<p>2-3.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p> <p>①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한다.</p> <p>②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방(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p>	
	<p>2-4.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p> <p>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p> <p>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p>	
	<p>2-5.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p> <p>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 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다.</p> <p>② 모든 통학차량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차량 안전설비가 구비되어 있다.</p> <p>③ 모든 통학차량에 대해 매일 안전점검이 실시된다.</p> <p>④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p> <p>⑤ 차량운전자와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은 차량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다.</p>	
	<p>2-6.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알고 있다.</p> <p>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p> <p>②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다.</p>	
	<p>2-7.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p> <p>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p>	

	<p>2-8.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p> <p>①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가정에 안내하고 있다.</p>	
<p><b>3.</b> <b>급식관리</b></p>	<p>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p> <p>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p> <p>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p> <p>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p>	<p>(예시) 10월 1,2주 과일 및 채소 등 주2회 제공</p>
	<p>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p> <p>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p> <p>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p>	
	<p>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p> <p>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p> <p>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p>	
	<p>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p> <p>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한다.</p> <p>② 식자재별로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p> <p>③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p>	<p>(예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 보관</p>
	<p>3-5.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p> <p>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p> <p>②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p>	
<p><b>4.</b> <b>위생관리</b></p>	<p>4-1.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p> <p>①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p>	

	<p>4-2.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p> <p>① 급·배식 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한다.</p> <p>②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p>	
	<p>4-3. 식수, 우유(모유), 컵, 젓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p> <p>①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p> <p>② 컵, 젓병, 젓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p>	
	<p>4-4. 조리실 및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p> <p>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p> <p>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p>	
	<p>4-5.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4-6.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4-7.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① 환기가 자주 이루어져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된다.</p> <p>②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p>	

**2 부모모니터링단 점검표**

**☑ 어린이집 개요**

어린이집명		방문일자	2018년	월	일
소재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등	<input type="checkbox"/> 협동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직장		

**1. 건강관리**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		개선필요 사항 (N평정사유 포함)
		Y	N	
<p><b>1-1.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b></p> <p>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관하고 있다.</p>	<p><b>1-1-①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서류 구비 여부 (전체 _____ 중 _____ 명)</p>			
<p><b>1-2.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b></p> <p>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있다.</p> <p>② 보육교직원이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p> <p>③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p>	<p><b>1-2-①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관리수칙 비치 여부</p> <p>※ 필수기재사항(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증상 등원하지 않아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기간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대처방법)</p> <p><b>1-2-② : 관찰, 면담</b></p> <p><input type="checkbox"/>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 숙지 및 실천 여부</p> <p><b>1-2-③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방법 안내 자료</p>			
<p><b>1-3.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b></p> <p>①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다.</p> <p>②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를 관리하고 있다.</p>	<p><b>1-3-①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p> <p><b>1-3-②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응급처치동의서 구비 여부 (90% 이상 구비) (전체 _____ 중 _____ 명)</p> <p>※ 필수기재사항(보호자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 보호자 서명)</p>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		개선필요 사항 (N평정사유 포함)
		Y	N	
<p><b>1-4.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b></p> <p>① 비상약품이 용도별 (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p>	<p><b>1-4-① : 관찰</b> □ 비상약품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 구비 여부</p> <p><b>1-4-② : 관찰</b> □ 비상약품의 사용(유효)기간 준수</p>			
<p><b>1-5.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b></p> <p>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p>	<p><b>1-5-① : 기록, 관찰</b> □ 투약의뢰 관련 기록 구비 여부 ※ 필수기재사항(투약하는 약의 용량, 시간(횟수), 의뢰자) □ 투약의뢰 관련 기록에 근거한 투약 실시 여부</p> <p><b>1-5-② : 기록</b> □ 투약보고 관련 기록 유무 ※ 필수기재사항(투약 여부, 투약자)</p>			

**2. 안전관리**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		개선필요 사항 (N평정사유 포함)
		Y	N	
<p><b>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 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이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b></p> <p>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 시설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② 실내외 놀이감이 파손된 부분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③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p>	<p><b>2-1-① : 관찰</b> □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 등 안전관리 - 현관문 개폐관리, 출입문 손끼임방지 장치 - 문턱, 창문보호대, 바닥, 벽면 등 균열 및 돌출 - 계단,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 방지 □ 전기 설비 및 전선줄 등 안전관리 - 전기콘센트 안전덮개 관리, 전선줄 관리 □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안전관리 - 가구, 가전제품, 시설·설비 안전 관리 - 온열기, 화기시설, 블라인드 줄 관리 - 실외 공간(마당, 실외놀이터 등) 위험요인 □ 세면대, 정수기 등 온수 조절 장치 □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의 영유아 출입 관리(조리실 등)</p> <p><b>2-1-② : 관찰</b> □ 실내 놀이감 파손 □ 실외 놀이감 파손</p>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V)		개선필요 사항 (N평정사유 포함)
		Y	N	
	<input type="checkbox"/> 놀잇감 보관함이나 바구니 파손 <b>2-1-③ : 관찰</b> <input type="checkbox"/> 보육실(칼 성인용 기위 스테이플러 본드, 글루건, 살충제, 방충제, 각종 스프레이, 침핀, 건전지, 비상약품함 등) <input type="checkbox"/> 화장실(각종 세제, 표백제, 나프탈렌 등) <input type="checkbox"/> 영아(만0-2세)가 삼킬 수 있는 활동자료(직경 3.5cm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 또는 놀잇감) <input type="checkbox"/> 기타(삽, 호미, 가시가 있는 식물 등) <input type="checkbox"/> 전기포트, 밥솥 등 영유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물건			
<b>2-2.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 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b>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관리되고 있다. ②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대피요령, 비상대피도, 업무분장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b>2-2-① : 관찰</b> <input type="checkbox"/> 비상탈출구(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설치 및 적재물, 위험물 관리 <input type="checkbox"/> 소화기 <input type="checkbox"/> 피난구 유도등 <input type="checkbox"/> 가스누설 경보기 <b>2-2-② : 기록</b> <input type="checkbox"/> 비상시 대처방안의 수립 ※ 필수기재사항(대피요령 비상대피도, 업무 분장 등)			
<b>2-3.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b> ①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②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방(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b>2-3-① : 기록</b>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안전교육(3가지 이상)계획 및 실시 기록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 예방 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교육, 교통안전 교육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기록 (전체 _____ 중 _____ 명) <b>2-3-② : 기록</b> <input type="checkbox"/> 소방 훈련 실시 기록			
<b>2-4.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b> 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 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b>2-4-① : 기록</b> <input type="checkbox"/> 귀가동의서 구비 (90% 이상 구비) (전체 _____ 중 _____ 명) <input type="checkbox"/> 귀가동의서 필수항목 기재여부 ※ 필수기재사항(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인계받는 보호자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 서명) <b>2-4-② : 관찰, 면담</b> <input type="checkbox"/> 인계과정 준수 여부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V)		개선필요 사항 (N평정사유 포함)
		Y	N	
<p><b>2-5.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b></p> <p>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 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다.</p> <p>② 모든 통학차량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차량안전설비가 구비되어 있다.</p> <p>③ 모든 통학차량에 대해 매일 안전점검이 실시된다.</p> <p>④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p> <p>⑤ 차량운전자와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은 차량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다.</p>	<p><b>2-5-①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차량 신고필증 구비</p> <p><b>2-5-② : 관찰</b></p> <p><input type="checkbox"/> 차량안전수칙 부착</p> <p><input type="checkbox"/> 소화기                    <input type="checkbox"/> 구급상자</p> <p><input type="checkbox"/> 개별 안전벨트            <input type="checkbox"/> 영아용 보호 장구</p> <p><b>2-5-③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차량안전점검표 상 안전점검 실시기록</p> <p><b>2-5-④ : 관찰, 면담</b></p> <p><input type="checkbox"/> 성인 동승 여부(운전자 제외)</p> <p><input type="checkbox"/> 지도보육교직원및 영유아의 개별 안전띠(보호장구) 착용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영유아 하차 및 이동 확인 후 차량 출발 여부</p> <p><b>2-5-⑤ : 면담</b></p> <p><input type="checkbox"/> 차량안전수칙 숙지 여부</p>			
<p><b>2-6.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알고 있다.</b></p> <p>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p> <p>②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다.</p>	<p><b>2-6-①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교육 이수 (전체 _____ 중 _____ 명)</p> <p><b>2-6-② : 면담</b></p> <p><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인지 여부(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숙지 장기결석 아동 및 학대 피해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등)</p>			
<p><b>2-7.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 존중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b></p> <p>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p>	<p><b>2-7-① : 면담</b></p> <p><input type="checkbox"/> 아동권리존중 인지 및 실천 여부</p> <p>* 모니터링 진행 과정 중 체벌 등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반드시 당일 통보</p>			
<p><b>2-8.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 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b></p> <p>①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가정에 안내하고 있다.</p>	<p><b>2-8-①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실천 관련 내용을 가정에 안내한 자료가 정통신문, 부모설명회, 게시판 등)</p>			

### 3. 급식관리

관찰 내용	확인 내용	확인결과 (√)		개선필요 사항 (N평정사유 포함)
		Y	N	
<p><b>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b></p> <p>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p> <p>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p> <p>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p>	<p><b>3-1-①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식단표 영양사 작성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식단표와 제공된 급·간식 일치 여부(50% 이상) (전체 _____ 일 중 _____ 일 변동)</p> <p><b>3-1-② : 관찰</b></p> <p><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 제공</p> <p><b>3-1-③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간식 1일 2회(오전, 오후) 제공</p> <p><input type="checkbox"/>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 제공 주 _____ 회</p>			
<p><b>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b></p> <p>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p> <p>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p>	<p><b>3-2-①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별 식품알레르기 질환 조사 기록 (알림장, 면담자료, 가정통신문 등)</p> <p><b>3-2-② : 기록</b></p> <p><input type="checkbox"/>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한 급·간식 실시 기록</p>			
<p><b>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b></p> <p>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p> <p>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p>	<p><b>3-3-① : 관찰</b></p> <p><input type="checkbox"/> 조리과정의 청결(조리 전 손 씻기, 맛보기 숟가락 별도 사용 등)</p> <p><b>3-3-② : 관찰</b></p> <p><input type="checkbox"/> 당일 급식에 제공된 음식 전량 폐기 여부</p>			
<p><b>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b></p> <p>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 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한다.</p> <p>② 식자재별로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p> <p>③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p>	<p><b>3-4-① : 관찰</b></p> <p><input type="checkbox"/>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한 보관(90% 이상 준수) (부적절한 보관 _____ 건)</p> <p><b>3-4-② : 관찰</b></p> <p><input type="checkbox"/> 식품구입(입고)일자 기입(90% 이상 준수) (미기입 식품 _____ 건)</p> <p><b>3-4-③ : 관찰</b></p> <p><input type="checkbox"/> 유통기한 준수 (유통기한 경과 식품 _____ 건)</p>			

관찰 내용	확인 내용	확인결과 (v)		개선필요 사항 (N평정사유 포함)
		Y	N	
<p>3-5.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p> <p>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p> <p>②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p>	<p>3-5-① : 관찰</p> <p><input type="checkbox"/> 식재료 보관 장소의 청결·위생 상태</p> <p>3-5-② : 관찰</p> <p><input type="checkbox"/> 식품과 소모품 분리 보관</p>			

#### 4. 위생관리

관찰 내용	확인 내용	확인결과 (v)		개선필요 사항 (N평정사유 포함)
		Y	N	
<p>4-1.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p> <p>①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p>	<p>4-1-① : 관찰</p> <p><input type="checkbox"/> 위생모(머리카락 밖으로 나오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위생복(전용 앞치마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위생화(전용 신발, 덧신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장신구 미착용</p>			
<p>4-2.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p> <p>① 급·배식 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한다.</p> <p>②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p>	<p>4-2-① : 관찰</p> <p><input type="checkbox"/> 급·배식 전용도구(집게, 국자 등) 위생상태</p> <p>4-2-② : 관찰</p> <p><input type="checkbox"/> 테이블 위생상태</p> <p><input type="checkbox"/> 음식별 배식도구 사용</p> <p><input type="checkbox"/> 개별식기 사용</p>			
<p>4-3. 식수, 우유(모유), 컵, 젓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p> <p>①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p> <p>② 컵, 젓병, 젓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p>	<p>4-3-① : 관찰</p> <p><input type="checkbox"/> 식수 관리(정수기 또는 끓여서 식힌 물 사용)</p> <p><input type="checkbox"/> 정수기 꼭지 청결, 필터 정기 교환</p> <p><input type="checkbox"/> 우유(모유), 이유식의 냉장보관</p> <p><input type="checkbox"/> 남은 우유(모유) 폐기</p> <p><input type="checkbox"/> 분유 보관상태(습기 없는 곳)</p> <p>4-3-② : 관찰</p> <p><input type="checkbox"/> 컵 관리(청결상태, 사용 전후 구분)</p> <p><input type="checkbox"/> 젓병·젓꼭지 소독·관리 (1회 사용 후 소독)</p>			
<p>4-4. 조리실 및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p> <p>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p> <p>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p>	<p>4-4-① : 관찰</p> <p><input type="checkbox"/>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의 위생관리</p> <p><input type="checkbox"/> 조리실 설비 및 주방가전의 위생관리</p> <p>- 개수대, 조리대, 하수구, 식기수납장, 쓰레기통</p> <p>-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p> <p><input type="checkbox"/> 후드·환풍기 방충망의 설치 및 작동 위생관리</p>			

관찰 내용	확인 내용	확인결과 (V)		개선필요 사항 (N평정사유 포함)
		Y	N	
	<b>4-4-② : 관찰, 면담</b> <조리도구 및 비품 관리> <input type="checkbox"/> 식기 <input type="checkbox"/> 칼 <input type="checkbox"/> 도마 <input type="checkbox"/> 행주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방도구(냄비, 국자, 후라이팬 등) <칼·도마 용도별 구분 사용> <input type="checkbox"/> 칼 <input type="checkbox"/> 도마			
<b>4-5.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b> 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b>4-5-① : 관찰</b> <input type="checkbox"/> 보육실 <input type="checkbox"/> 화장실(세면장) <input type="checkbox"/> 조리실 <input type="checkbox"/> 현관 <input type="checkbox"/> 복도(통로) <input type="checkbox"/> 계단 <input type="checkbox"/> 유희실 <input type="checkbox"/> 교사실 <input type="checkbox"/> 원장실 <input type="checkbox"/> 자료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b>4-5-② : 관찰</b> <input type="checkbox"/> 보육실의 놀잇감(바구니 포함) 청결			
<b>4-6.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b> 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b>4-6-① : 관찰</b> <input type="checkbox"/> 개별 침구 구비(이불, 요, 베개) <input type="checkbox"/> 청결 상태(이불, 요, 베개) <b>4-6-② : 관찰</b> <input type="checkbox"/> 개별 칫솔, 양치컵 구비 <input type="checkbox"/> 칫솔 양치컵의 청결			
<b>4-7.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b> ① 환기가 자주 이루어져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된다. ②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	<b>4-7-① : 관찰</b> <input type="checkbox"/> 보육실(실내 공유 공간 등) 환기 여부 (급간식 후, 낮잠시간 후 등) <b>4-7-② : 관찰</b> <input type="checkbox"/> 실내 적정 온도 유지			

## 참고

## 부모모니터링 등급평정 방식

### ▣ 부모모니터링 등급평정 방식

- 각 영역의 지표별 충족여부에 따라 ‘충족(Y)’ 또는 ‘미충족(N)’에 체크
- 각 영역별 ‘충족(Y)’ 지표 개수에 따라 3개 등급 중 1개 부여
  - \* 2-1-①의 경우 5개의 구성요소( ①~⑤ ) 중 4개 이상 충족해야 ‘Y’로 평정
  - \* 4-4-①의 경우 3개의 구성요소( ①~③ )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Y’로 평정

영역(지표 수)	‘충족(Y)’ 지표 수		
1. 건강관리(5)	5개	3~4개	1~2개
2. 안전관리(8)	8개	5~7개	1~4개
3. 급식관리(5)	5개	3~4개	1~2개
4. 위생관리(7)	7개	4~6개	1~3개
	↓	↓	↓
	우수	양호	개선필요

- 어린이집의 최종 모니터링 등급은 영역별 등급 종류(우수, 양호, 개선필요)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양호, 개선필요) 중 1개 등급 부여
  - \* 1개 영역이라도 ‘개선필요’ 시 ‘개선필요’ 등급 부여

어린이집 등급	등급부여기준	예시
우 수	모든 영역 모두 ‘우수’ 등급인 기관	‘우수’ 영역 4개
양 호	‘개선필요’ 등급인 영역이 없고, ‘우수’ 등급이 아닌 기관	‘우수’ 3개, ‘양호’ 1개 영역 ‘우수’ 2개, ‘양호’ 2개 영역 ‘우수’ 1개, ‘양호’ 3개 영역 ‘우수’ 0개, ‘양호’ 4개 영역
개선필요	1개 영역 이상 ‘개선필요’ 등급인 기관	‘개선필요’ 영역 1개 이상

**3 부모모니터링 ( )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지자체 제출)**

**☑ 어린이집 개요**

어린이집명			
소재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등 <input type="checkbox"/> 협동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직장		
모니터링 결과			
원장		아동현황	정원/현원: _____ / _____
방문일자	2018년 월 일	방문시간	: ~ :
컨설턴트	(서명)	어린이집 확인자	(원장) (서명)

**☑ 컨설팅 결과**

영역	지표	컨설팅 주요 내용
1. 건강관리	1-1.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1-2.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 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1-3.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1-4.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 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1-5.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예시) 투약의뢰서에 따른 투 약 후 부모에게 투약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알림장을 통해 투약보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함
2. 안전관리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 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이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2-2.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 되어 있다.	

	<p>2-3.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p> <p>2-4.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p> <p>2-5.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p> <p>2-6.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 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알고 있다.</p> <p>2-7.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p> <p>2-8.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p>	
<p><b>3.</b> <b>급식관리</b></p>	<p>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p> <p>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p> <p>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p> <p>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p> <p>3-5.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p>	
<p><b>4.</b> <b>위생관리</b></p>	<p>4-1.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p> <p>4-2.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p> <p>4-3. 식수(우유모유), 컵, 젓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p> <p>4-4. 조리실 및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p> <p>4-5.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4-6.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4-7.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p>	<p>(예시) 주방벽면, 후드, 환풍기 청소를 실시하여 조리실 청결 부분 개선됨</p>
<p><b>총계</b></p>	<p>컨설팅 항목수</p>	<p>( )</p>
<p><b>총괄 의견</b></p>		



## 부록 - 주요개정사항

1. 2018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주요 개정사항
2. 2018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주요 변경사항



# V. 부록 - 주요개정사항

## 1 2018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부모 모니터링단 선정 및 구성 (p.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단 선정기준은 「2017년 보육 사업 안내」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는 <u>현재 어린이집을 이용*</u>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로하며, <u>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관할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하여 부모참여 확대와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이해를 제고 함</u></li> </ul> </li> <li>*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만 참여하는 부모는 부모모니터링단 참여 제한</li> </ul>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단 선정기준은 「2018년 보육 사업 안내」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는 <u>관할 시군구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 이용 부모*</u>로 하여 <u>부모 참여 확대와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이해를 제고함</u></li> <li>*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만 참여하는 부모는 부모모니터링단 참여 제한</li> <li>- <u>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이해 제고와 부모참여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부모의 활동기간을 연속하여 최대 2년으로 제한*</u></li> <li>* 2018~2019년 연속하여 부모 단원으로 활동한 경우 2020년 활동 불가, 2021년 활동 가능</li> </ul> </li> </ul>
부모 모니터링 대상 (p.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평가인증(확인점검)과 중복 방지, 어린이집 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장 부담완화 등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을 정하여 운영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평가인증(확인점검)과 중복 방지, 어린이집 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장 부담완화 등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대상 우선 선정 및 제외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li> </ul>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관리 강화 (p.8)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관리 강화</li> <li>○ <u>모니터링 우선 선정 및 선정제외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운영주체(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는 모니터링 대상을 연간 조정하여 중복 점검을 방지하여야 함</u></li> </ul>

구분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초의 모니터링 대상의 경우 평가인증, 확인점검 등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반드시 모니터링 대상을 조정하여 실시하여야 함</li> <li>○ 사업대상 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추진</li> <li>* 컨설팅 연계, 교육 및 간담회, 사업 평가회 개최 등 실시</li> </ul>
<p>부모모니터링 실행력 제고 (p.8)</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모니터링 실행력 제고</li> <li>○ 부모모니터링·컨설팅의 거부·방해·기피 등이 있는 경우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연계 가능함</li> <li>* 부모단의 지자체 보고 → 지자체의 지도 점검 연계 필요성 검토하여 실시 가능</li> </ul>
<p>모니터링 준비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모니터링 어린이집 확인</u></li> <li>-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선정한 어린이집 명단 확보</li> <li>-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명단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일정 계획</li> <li>* 1일 2개소 원칙이나 어린이집 위치에 따라 조정 가능</li> <li>* 2개소 방문 시에도 '급식 또는 간식'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대상 어린이집 확인</u></li> <li>- 시도 및 시군구청(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어린이집 명단을 토대로 부모 단원과 전문가 단원이 함께 어린이집 명단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일정을 계획함</li> <li>- 부모모니터링단은 하루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정된 시간에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 실시</li> <li>* 급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된 시작(9:30~10:00) 및 종료(12:30~13:00) 시간에 모니터링 실시</li> <li>**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li> </ul>
<p>모니터링 실시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실시</li> <li>- 건강·안전·급식·위생관리 영역의 지표에 대해 관찰, 면담, 기록 등의 확인방법을 준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li> </ul>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실시</li> <li>- 건강·안전·급식·위생관리 영역의 지표에 대해 관찰, 면담, 기록 등의 확인방법을 준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li> <li>- 부모 단원은 급식·위생관리 영역, 전문가 단원은 건강·안전관리 영역을 구분 실시 함</li> </ul>

구분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모니터링 지표의 확인사항을 「<u>부모 모니터링 점검표</u>」를 토대로 꼼꼼하게 확인한 후, 결과를 ‘충족(Y)’ 또는 ‘미충족(N)’으로 표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함</li> <li>- 부모 단원과 전문가 단원이 해당 영역에 대해 확인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재차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전문가 단원이 「<u>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u>」에 기재함</li> <li>- 현장개선지도는 반드시 전문가 단원이 진행하며, 「<u>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u>」의 개선필요사항을 지표의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설명하고 자율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li> <li>※ 부모 단원 개인의 의견을 전문가 단원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li> </ul>
<p>모니터링 종료 (p.25)</p>	<p>○ 모니터링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확인한 후 <u>결과 보고서</u> 앞면에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li> </ul> <p>&lt;신설&gt;</p>	<p>○ 모니터링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안내한 후, 「<u>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u>」 앞면에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을 받음</li> <li>-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을 받은 후, 「<u>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u>」를 복사하여 복사본은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원본은 전문가 단원이 관리함</li> <li>- 부모 단원과 전문가 단원이 모니터링 시 사용한 「<u>부모모니터링 점검표</u>」는 모니터링 진행 후, 전문가 단원이 관리함</li> <li>※ 「<u>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u>」 및 「<u>부모모니터링 점검표</u>」 원본은 추후 시군구청에 제출함</li> <li>- 모니터링 실시 결과 ‘개선필요’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추후 컨설팅이 의무 연계되며, 컨설팅 이후에는 2차 모니터링이 진행됨을 안내하고, ‘우수’ 또는 ‘양호’ 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희망할 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함</li> </ul>

구분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p>모니터링 실시결과 보고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현장에서 작성한 <u>결과보고</u>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총괄의견과 특이 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 전문가가 협의하되, 전문가가 직접 작성</li> </ul> </li> <li>- 모니터링 현장에서 결과보고서의 문항에 바로 확인사항 표시</li> </ul> </li> <li>○ 결과보고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서 작성 후 시군구청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센터로 제출</li> </ul> </li> <li>- 사본 등으로 3일 이내 제출(추후 원본 제출)하되,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li> <li>- <u>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사실을 통보</u></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모니터링 실시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현장에서 작성한 <u>결과 안내서</u>에 총괄 의견과 특이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단원과 전문가 단원이 협의하되, 전문가 단원이 직접 작성</li> </ul> </li> <li>- 최종 작성한 「<u>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u>」와 「<u>부모모니터링 점검표</u>」 원본은 추후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되, 사본은 3일 이내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센터로 제출</li> </ul> </li> <li>- <u>아동학대, 법령 위반사항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해당사실을 즉시 통보함</u></li> </ul> </li> </ul>
<p>컨설팅 진행방법 (p.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어린이집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결과 미흡 어린이집(필수 선정)</li> <li>- 어린이집의 컨설팅 자율 신청</li> <li>- 모니터링 결과 일부 영역(건강, 급식, 위생, 안전)에서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및 시군구청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논의 후 판단</li> </ul> </li> <li>- 모니터링 결과 우수 민간, 국공립어린이 집 등이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 관리 필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어린이집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 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컨설팅 실시함</u></li> <li>- <u>모니터링 결과 '우수' 및 '양호' 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컨설팅 실시함</u></li> <li>- <u>모니터링 결과 '우수' 및 '양호' 등급이라 하더라도, 일부 영역(건강, 안전, 급식, 위생)에서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컨설팅 실시 (시도 및 시군구청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논의 후 판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2개소 어린이집을 컨설팅하며, 컨설팅 점검 내용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li> </ul> </li> </ul> </li> </ul>
<p>모니터링 지표 및 평정방식 (점수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모니터링 지표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중복 지표를 통합·조정(39→30개)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지표 추가 등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지표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모니터링 지표 및 평정방식(점수제 → 등급제)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중복지표를 통합·조정하여 지표수를 적정화(4개 영역 30개 지표 → 4개 영역</li> </ul> </li> </ul>

구분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등급제) 개선 (p.35)	개선	25개 지표) 하고, 평가인증 통합지표의 확인내용 수준과 일치시켜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제고함 ○ 점수와열 및 점수평정에 대한 업무 부담 완화,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우수, 양호, 개선필요)으로 산정함 - 지표별 평가항목의 충족(Y/N)개수로 모니터링 결과를 산정함에 따라,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표 평정 실시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등급평정 방식 (p.36)	○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의 4영역, 11항목, 30개 지표 * 지표에 따라 2점~5점 부여	○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의 4영역,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2 2018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주요 개정사항**

**1. 건강관리 : 5개**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건강검진을 연 1회 실시 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1-1.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관하고 있다.
②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1-2.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있다. ② 보육교직원이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 ③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p>③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p>	<p>1-3.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다.                  ②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를 관리하고 있다.</p>
<p>④ 사용기간 내의 비상약품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되어 있다.</p>	<p>1-4.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 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①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p>
<p>-</p>	<p>1-5.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b>(신설)</b>                  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p>
<p>⑤ 식중독 및 감염병 등이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으며 신고한다.</p>	<p>1-2 지표에 통합</p>

2. 안전관리 : 11개 → 8개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p>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 방지, 모서리보호대 등)가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p>	<p>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② 실내외 놀잇감이 파손된 부분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③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p>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p>②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p>	<p>2-2.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p> <p>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관리되고 있다.</p> <p>②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대피요령, 비상 대피도, 업무분장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p>
<p>③ 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한다.</p>	<p>2-3.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p> <p>①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한다.</p> <p>②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방(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p>
<p>④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p>	<p>2-3 지표에 통합</p>
<p>⑤ 영유아 등·하원시 교사 및 보호자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p>	<p>2-4.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p> <p>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p> <p>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p>
<p>⑥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 및 차량 안전설비를 구비하고,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한다.</p>	<p>2-5.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p> <p>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 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다.</p> <p>② 모든 통학차량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차량 안전설비가 구비되어 있다.</p> <p>③ 모든 통학차량에 대해 매일 안전점검이 실시된다.</p> <p>④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p> <p>⑤ 차량운전자와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은 차량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다.</p>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p>⑦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으며, 차량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숙지(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한다.</p>	<p>2-5 지표에 통합</p>
<p>⑧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체교육을 진행한다.</p>	<p>2-6.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알고 있다.</p> <p>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p> <p>②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다.</p>
<p>⑨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 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p>	<p>2-6 지표에 통합</p>
<p>⑩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안다.</p>	<p>2-7.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p> <p>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p>
<p>⑪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p>	<p>2-8.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p> <p>①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가정에 안내하고 있다.</p>

3. 급식관리 : 6개 → 5개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식을 제공한다.	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 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 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②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이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3-1 지표에 통합
③ 특별한 음식(식품 알레르기 등)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그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 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④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
⑤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 식품구입 날짜, 유통기한 등)을 준수한다.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한다. ② 식자재별로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 ③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⑥ 식자재 보관 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5.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②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4. 위생관리 : 8개 → 7개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①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	4-1.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 ①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
②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4-2.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① 급·배식 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②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컵, 젓병 등을 소독 관리하여 청결하게 사용).	4-3. 식수, 우유(모유), 컵, 젓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①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② 컵, 젓병, 젓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
④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4-4. 조리실 및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⑤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4-4 지표에 통합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p>⑥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과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4-5.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⑦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4-6.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⑧ 쾌적한 보육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p>	<p>4-7.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p> <p>① 환기가 자주 이루어져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된다.</p> <p>②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p>



「2018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 보육사업안내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본 자료는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방법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또는 교육을 위한 자료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